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03

[2009. 1. 6. ~ 2009. 7. 7.]

진실화해위원회 제7차 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680000-000001-0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2009. 1. 6. ~ 2009. 7. 7.]

03

진실화해위원회 제7차 보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이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6일부터 2009년 7월 7일까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차례

제 2 부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사건(1)

○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11
○ 괴산·청원(북일·북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99
○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235
○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327
○ 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541
○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681
○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733

1권

총론

제1절 조사보고서 개요

1.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개요
2. 보고서 구성과 주요 내용

제2절 신청사건 처리 및 결정 현황

1. 진실규명 신청사건 처리 현황
2. 진실규명 및 진실규명불능 결정 현황

제3절 권고 및 이행 현황

1. 위원회 권고 현황
2. 권고이행 현황

제4절 정책 건의

1.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

부록

- I. 진실화해위원회 일반 현황
- II.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관련 참고자료
- III. 포괄적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 관련 참고자료
- IV. 진실화해위원회 발간 조사보고서 전체 목차

2권

제1부 민족독립규명위원회 사건

- 어종면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 홍승용의 의병활동(불능)
- 고창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전주형무소 등 전주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들의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나주 봉황면에서 광귀환 등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 무안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화순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및 강제연행사건
- 영광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해남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남원지역 적대세력사건
- 임실지역 적대세력사건
- 장흥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 충북지역 적대세력사건
- 장성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4권

제 2 부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사건(2)

- 화순지역 경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 한국전쟁 이전 경산지역 민간인(김종학 외 9명) 희생사건
- 전남지역(담양·장성·화순·영광) 11사단 사건
- 경남 함안지역 미군폭격 사건
- 경주 감포읍 정호식·정의선 희생사건
- 전남 서남부지역(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 민간인 희생사건
-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 나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 여주 부역혐의 희생사건
- 음성군 대소면 부역혐의자 희생사건
- 경남지역 군경관련 박병수·이복울·김진순·김만석 희생사건(불능)
- 경정결정
 -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
 -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5권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 사건
- 김우철 형제 간첩조작 의혹 사건
- 석달임 불법구금·가혹행위 의혹 사건
- 남현진 의문사 사건
- 청주보안부대 운전병 불법구금 및 고문 사건
-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 임봉택 외 2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 구명우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 최복남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 재일조총련 관련 최양준 간첩조작 의혹 사건
- 송원영 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
- 안상근 의문사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 의혹
- 문인 간첩단 사건
- 간첩사건 연루 부태삼 인권침해사건
- 남북귀환자 정영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 김용기 군복무 중 가혹행위 의혹 사건
- 광종대·김해봉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 전민학련·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 유신체제하 학원통제 사건
- 권영백 고문 사건(불능)
- 임학수 북한 찬양 고무 조작 의혹 사건(불능)
- 차은영 등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불능)
- 박순애 간첩조작 의혹 사건(불능)
- 안계순 사망 사건(불능)

제 2부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사건 (1)

-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 과산·청원(북일·북이) 국민보도연맹 사건
- 충남 서부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 완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 양평 부역혐의 희생사건
- 강화(교동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결정사안】

차대희(車大熹, 다-7106호) 외 53명의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전북지구 CIC, 소속 미상의 국군 헌병대에 의해 전라북도 일대 야산 골짜기, 냇가,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집단사살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전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전북지구CIC, 헌병대에 의해 1950년 7월경 전라북도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보도연맹 전라북도연맹 각 군연맹에 가입되었던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연초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활동 경력에 따라 분류되었고 ‘갑종’은 7월 초순경에, 나머지는 전북지역 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7월 중순경에 전북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2.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4명이다. 신청사건 중 확인된 희생자는 차대희(車大熹, 다-7106호) 등 41명이다. 미신청사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권용하(權龍夏) 등 13명이다.

3.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대다수는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농민들이었고,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살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속에서 장기간 구금하고 불법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전북지방경찰국과 각 지역 경찰서, 전북지구CIC, 그리고 헌병대이다. 이들은 내무부 치안국-전북지방경찰국-각 경찰서, 육군본부와 전북지역

제 3 권

주둔 사단으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 속에서 가해행위를 하였다. 상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사살명령 여부 및 내용을 자료로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불법사살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은 전시계엄 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그 지휘 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5.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사살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전 문】

【사 건】 다6호-710 외 41건,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신청인】 정철환 외 39명

【결정일】 2009. 1. 19.

【주 문】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사건접수와 처리

신청인 정철환(다-7106호) 외 39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진실규명대상자들을 국민보도연맹원 혹은 인민군에 동조할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전라북도 내 각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예비검속 후 학살했다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27차 전원위원회(2006. 10. 10.)에서 신청사건을 포함하여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의결을 하였다. 한편 이후 접수된 신청사건에 대

해서는 제28차 집단희생규명위원회(2007. 2. 13.)에서 조사개시를 의결하였다. 조사개시된 사건 중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42건의 상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신청서 접수상황

지역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신청인과의관계	당시 주소	
전주 (완주)	1	'06.11.21	7106	정철환 (鄭喆煥)	차대희 (車大喜)	여	38	모	전주시 이하 주소 불명	
이리 (익산)	2	'06.1.1	564	민영기 (閔泳基)	민영술 (閔永述)	남	27	형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301	
	3	'06.2.15	1283	정영관 (鄭永寬)	정진호 (鄭眞鎬)	남	35	부	익산군 함열면 석매리 837	
	4	'06.3.24	2646	정영관 (鄭永寬)	정진호 (鄭眞鎬)	남	35	부	익산군 함열면 석매리 837	
	5	'06.10.27	6359	이상화 (李相和)	이길현 (李吉賢)	남	32	부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 1034	
	6	'06.11.30	8506	김해균 (金海均)	김원용 (金元龍)	남	43	형	이리시 갈산동 번지미상	
	7	'06.11.30	8508	이덕구 (李德求)	이종규 (李鍾奎)	남	47	부	이리시 목천동 342	
	8	'06.11.30	9964	이봉순 (李鳳順)	이수웅 (李秀雄)	부	30	부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2	
	9	'06.11.30	9967	김석환 (金石煥)	김동군 (金東群)	남	29	부	익산군 성당면 부곡리 122	
	군산 (옥구)	10	'06.10.4	5499	고홍곤 (高鴻坤)	고병옥 (高炳玉)	남	36	부	옥구군 임피면 월하리 609
11		'06.11.13	6779	양원진 (梁元鎭)	양수성 (梁洙晟)	남	48	부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388	
12		'06.11.15	6828 (1)	채무길 (蔡武吉)	채기묵 (蔡基默)	남	27	숙부	옥구군 나포면 주곡리 247	
13		'06.11.30	8046	김신정 (金臣貞)	김태욱 (金泰郁)	남	31	부	옥구군 미면 미룡리 126	
14		'06.11.30	8543	안진태 (安珍泰)	안명옥 (安明玉)	남	35	부	군산시 둔율동 147	

제 3 권

지역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당시 주소	
고창	15	'06.11.30	9648	성종철 (成鍾哲)	성윤기 (成潤基)	남	23	부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270	
금산	16	'06.3.6	2020	이상준 (李相駿)	이준규 (李準奎)	남	25	형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00	
	17	'06.11.30	9426	정동조 (鄭東朝)	정해선 (鄭海善)	남	25	부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344	
김제	18	'06.1.4	486	김대영 (金大榮)	김진열 (金鎭烈)	남	31	부	김제군 광활면 오포리 번지미상	
	19	'06.11.30	8407	이순태 (李淳泰)	이석환 (李錫煥)	남	28	형	김제군 백산면 상정리 번지미상	
	20	'06.11.30	10139	곽창원 (곽창원)	곽삼주 (郭參柱)	남	21	부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256	신청인 외국거주
	21	'06.11.30	10274	최서균 (崔瑞均)	최남석 (崔南錫)	남	38	부	김제군 만경면 몽산리 222	
남원	22	'06.11.24	7676	곽성문 (郭性文)	곽봉철 (郭鳳喆)	남	31	형	남원군 운봉면 덕산리 번지 미상	
	23	'06.11.30	10144	한점녀 (韓点女)	한백장 (韓白長)	남	49	부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233	
무주	24	'06.11.2	6505	길준섭 (吉俊燮)	길상교 (吉相敎)	남	35	부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749	
	25	'06.11.2	6506	김정임 (金貞任)	김진태 (金鎭泰)	남	31	부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84	
	26	'06.11.27	7833	한금배 (韓今培)	한학문 (韓學文)	남	32	부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867	
부안	27	'06.10.17	5707	손정훈 (孫正薰)	손기옥 (孫基玉)	남	37	부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778	
	28	'06.10.17	5806	지진만 (池鎭萬)	지동규 (池東圭)	남	26	부	부안군 동진면 제전리 번지미상	
	29	'06.11.14	6793	김철 (金喆)	김홍술 (金洪述)	남	37	조부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235	
	30	'06.11.14	6794	허철수 (許哲洙)	허종택 (許宗鐸)	남	32	부	부안군 산내면 석포리 772	
	31	'06.11.14	6795	최기원 (崔基元)	최순환 (崔順煥)	남	39	부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466	

지역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신청인	진실규명대상자					비고
					성명	성별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당시 주소	
	32	'06.11.21	7100	이상기 (李相基)	이성열 (李成烈)	남	43	부	부안군 동진면 오중리 번지미상	
	33	'06.11.30	8404	은희창 (殷熙昌)	은갑동 (殷甲東)	남	39	부	부안군 보안면 대곡리 번지미상	
	34	'06.11.30	8794	이양임 (李良任)	이혁춘 (李赫春)	남	28	부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525	
정읍	35	'06.2.6	1019	김영집 (金永執)	김보현 (金寶鉉)	부	40	부	정읍군 소성면 애당리 654	신청인 사망
	36	'06.11.30	8354	선동엽 (宣東燁)	선기홍 (宣基洪)	남	38	부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43	
	37	'06.11.30	8355	김예순 (金禮順)	배동현 (裴同鉉)	남	29	남편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76	신청인 외병
	38	'06.11.30	8356	남궁대성 (南宮大聲)	남궁일남 (南宮一南)	남	34	부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81	
	39	'06.11.30	8357	선동엽 (宣東燁)	선학권 (宣學權)	남	31	숙부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43	
	40	'06.11.30	8358	황백용 (黃百龍)	황천용 (黃千用)	남	26	형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79	
	41	'06.11.30	8359	주경렬 (侏京烈)	주동우 (侏東羽)	남	46	부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39	
	42	'06.11.30	9833	추화순 (秋花順)	주명렬 (朱明烈)	남	24	시숙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690	

나. 조사대상 지역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할 당시 전라북도의 행정구역은 전주시·군산시·이리시 등 3개 시와 완주군·진안군·금산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남원군·순창군·정읍군·고창군·부안군·김제군·옥구군·임실군 등 14개 군을 포함하여 17개 시·군으로 구성되었다.¹⁾

1) 대한민국행정학회편,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49.

제 3 권

그런데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제 1172호)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산군이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되었고, 1995년 옥구군이 군산시로, 이리시는 익산시로 편입되어 현재의 행정구역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1950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한편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관할경찰서가 보도연맹 결성부터 예비검속, 희생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하므로 보고서에서는 관할경찰서 별로 분류하여 사건지역을 재구성하였다. 즉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경찰서가, 군산시와 옥구군은 군산경찰서가, 이리시와 익산군은 이리경찰서가 보도연맹원 검속 및 희생에 관여하였으므로 6개 시·군은 다시 3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전북 보도연맹 사건은 14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 순창군·장수군·진안군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 건이 없고, 2008년 기초사실조사²⁾에서도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이 파악되지 않아 사건경위에서 제외하였다.

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1950년 7월경 전라북도 각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보도연맹 원들과 예비검속자들은 각 지역 경찰서와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한 이후 각 경찰서 유치장 등에 집단구금되었다. 이후 경찰은 인민군이 진입하기 전에 이들을 산골짜기, 경찰서 유치장, 냇가 등지에서 법적인 절차 없이 살해하였다.

이에 신청인 정철환(다-7106호) 외 39명은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유족들이 입은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2) 『기초사실조사 이행실적 및 자료조사 제출(최종)』(행정지원관실-21305, 2008.12.05).

3. 규명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희생자 수와 신원,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해주체,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및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가. 자료조사

1) 경찰자료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경찰관서에 대해 기록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생산된 기록 중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으므로, 주로 한국전쟁 휴전 이후 보도연맹·처형·부역·월북·행불·의용군 입대·간첩·입산·도피·좌익출소 등과 관련된 사안을 사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대공신원 관련 기록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³⁾ 이를 위해 일선 경찰서 문서고 및 정보·보안부서 등을 방문하여 생산·보존하고 있는 사건관련 중요자료 및 경찰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민간인 희생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자료는 임실경찰서에서 생산한 「대공전산화자료」,⁴⁾ 고창경찰서에서 생산한 「요시찰인명부」 8권,⁵⁾ 순창경찰서가 생산한 「요시찰인명부」⁶⁾ 등이나 분석결과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2) 신문자료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1949년부터 1950년 전쟁 발발 전까지 국민보도연맹 전라북도연맹 및 각 군연맹의 결성, 조직, 활동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에 발간된 전북지역 일간지

3) 『2007~08년 전국 경찰관서 기록 조사 출장 결과 종합 보고』(조사1팀-540, 2008.05.14.)

4) 위 자료는 임실경찰서가 1979년에 생산한 자료로서 「관보삭제 및 중지자(사망자포함)」 167명, 「6.25당시 처형자」 365명, 「월북도피행불자」 192명, 「사찰전과자」 43명에 대한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기록한 3급 비밀문서이다. 그런데 6·25당시 처형자 365명에 대해서는 처형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처형이유 등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며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구한 사건관련자의 성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5) 위 자료는 고창경찰서가 1951~1953년에 생산한 자료로서 각 페이지마다 개인의 사진과 함께 성명과 본적, 주소는 물론 학력, 재산유무, 교우관계, 가맹단체, 전과유무, 6·25사변전의 행적, 부역행위의개요(죄적관계)를 기재한 부역자관리카드로 추정되었다.

6) 순창경찰서가 1968년도에 생산한 자료로서 순창경찰서는 현존하는 요시찰인들을 갑·을·병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성명과 주소만 나열되어 있어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 3 권

및 중앙지 등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발간된 것으로 알려진 전북 일간지 삼남일보,⁷⁾ 전북신문,⁸⁾ 전주일보,⁹⁾ 군산신문¹⁰⁾ 중 1949년과 1950년 사이의 발간본은 현재 보관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1949년과 1950년 사이에 발간된 중앙지 중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연합신문,¹¹⁾ 부인신문,¹²⁾ 자유신문¹³⁾ 등 서울중앙지의 지역 소식란에 실린 기사들로 상황을 추정할 수 있었다.¹⁴⁾ 그러나 국민보도연맹 전라북도연맹과 관련하여서는 1949년 12월 19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전북보련 결성과 활동내용, 연합신문 1950년 1월 18일자에 실린 부안군연맹 결성 소식이 유일하였다.

3) 기타 자료조사

『전북경찰60년사』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이 2005년에 발간한 책자로 각 경찰서의 연혁, 전쟁 전 치안활동, 주요 사건, 한국전쟁 당시 전북지역의 전투사 및 수복 후 토벌작전 등을 살필 수 있었다. 전라북도의회가 발간한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는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하였던 전체 민간인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¹⁵⁾

-
- 7) 1946년 5월 1일 군산에서 군산일보(群山日報로 창간되었고, 1949년 3월 1일 이리시로 이전하면서 삼남일보로 개제하였다. 그 후 전북매일신문(全北每日新聞)으로 개제하였다가 1973년 6월 1일 전북매일신문, 전북일보(全北日報), 호남일보(湖南日報) 등 3사가 통합하여 전북신문(全北新聞)으로 창간하였다. 현재 중앙국립도서관 마이크로필름실에는 1964년 10월~1968년 5월 사이에 발간된 신문이, 전북대학교 도서관에는 1952년 5월~1968년 6월 사이에 발간된 신문이 보존되어 있다.
 - 8) 전북신문은 전북민보사의 재산이 귀속되고 서울 사람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탈해서 새로 만든 신문이었고 전쟁 직후 전주일보와 통합, 전북시보로 통합되었다(『전주시사』, 1986, 1191쪽).
 - 9) 1947년 7월 정방현이 창간한 신문이다. 이후 이봉규에게 넘어갔다가 전쟁 이후 전북신문과 통합하여 제호가 전북시보로 변경되었다. 이후 전북시보는 1950년 10월 10일 편집 겸 발행판권이 박용상에게 넘어가 제호가 전북일보로 변경되었다(『전주시사』, 1986, 1191쪽).
 - 10) 1947년 10월 15일 군산시 중앙로 1가에 사옥을 두고 김종량을 사장으로 하여 창간된 신문으로 전쟁 직전까지 발간하였고 9·28수복 후에 사옥을 이전하였으며 1961년 편집장이었던 원상식이 인수하여 제호를 호남일보로 바꾸었다.
 - 11) 1949년 1월 22일에 양우정(梁又正)이 창간한 일간신문이다. 1949년 1월~1960년 9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실에 보존되어 있는 연합신문을 조사하였다.
 - 12) 1950년 1월~6월까지 서울에서 발간되어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실에 보존되어 있는 부인신문을 조사하였다.
 - 13) 1945년 10월~1959년 12월까지 서울에서 발간되어 국립중앙도서관 마이크로필름실에 보존되어 있는 자유신문을 조사하였다.
 - 14)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신문자료 분석 보고』(조사3팀-736, 2008.10.20).
 - 15) 전라북도의회가 1993년 9월 2일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강선)'를 구성하여 1년간 전라북도 남원·고창·순창·임실·정읍·무주지역을 중심으로 11개 시·군과 50개 읍·면을 조사한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1994년 10월 발간된 상기 보고서는 전라북도지역에서 군경에 의한 희생자

또한 『전북도정50년사』,¹⁶⁾ 『전북지방검찰사』,¹⁷⁾ 『전주시사』,¹⁸⁾ 『완주군지』,¹⁹⁾ 『이리시사』,²⁰⁾ 『군산시사』,²¹⁾ 『고창군지』,²²⁾ 『남원군지』,²³⁾ 『무주군지』,²⁴⁾ 『부안군지』,²⁵⁾ 『정읍시사』,²⁶⁾ 『임실군지』²⁷⁾ 등 전북도내 시·군에서 발간되었던 향토자료를 입수·분석하였다. 위 자료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인 기록은 없었으나 해방 후에서 전쟁 이전 시기까지 이념갈등, 좌익에 의해 발생했던 주요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어 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외에도 진실규명대상자 관련 제적등본, 행형기록 등을 입수하여 사망경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였고, 또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한 서적들과 보고서, 개인 회고록 등도 참조하였다.

나. 신청인·참고인 조사

1) 신청인 조사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42건²⁸⁾ 중 39건에 대한 신청인 조사는 대체로 면담 후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건강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전화조사 후 통화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²⁹⁾ 이 중에서 사건번호 다-1283호와 다-2646호는

는 3,218명, 빨치산에 의한 희생자는 1,202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기재된 희생자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부터 1953년 공비토벌작전이 실시된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 관련 피해자들로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았다.

16) 전라북도 전라북도지편찬위원회, 『全北道政 50年史』, 2000.

17) 전주지방검찰청, 『全北地方檢察史』, 1993.

18) 전주시사편찬위원회, 『전주시사』, 1986.

19) 완주군지편찬위원회, 『완주군지』, 1996.

20) 이리시사편찬위원회, 『이리시사』, 1989.

21) 군산시, 군산시사편찬위원회, 『군산시사』, 2000.

22) 고창군청, 고창군지편찬위원회, 『고창군지』, 1992.

23) 남원군지편찬위원회, 『남원군지』, 1992.

24)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무주군지』, 1990.

25) 부안군청, 전북향토문화연구회, 『부안군지』, 1991.

26) 정읍시사편찬위원회, 『정읍시사』, 2003.

27)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임실군지』, 1997.

28) 한편 다-1019호(신청인 김영집)건은 진실규명대상자 2인 중 김석현의 사망경위가 보도연맹 사건과 상이하므로 현재 계속 조사 중이다. 다-7575호(신청인 김기찬)건은 신청인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고, 관련 유족이 진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참고인 확보 등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다-8045호(신청인 김신정)건은 진실규명대상자 2인 중 김창욱의 사망경위가 진실화해위원회가 규정하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하여 각하할 예정이다. 따라서 상기 4명의 진실규명대상자는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29) 전북국민보도연맹사건 신청인 및 참고인 전화조사 결과보고(조사3팀-833, 2008.11.24).

제 3 권

동일 신청인이 동일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해 중복 신청하였고, 사건번호 다-8354호와 다-8357호는 동일 신청인이 다른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해 신청하여 신청인 조사는 각각 1회를 실시하였다.

사건번호 다-1019호(신청인 김영집) 건은 신청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의 동생을 조사하였고, 사건번호 다-10139호(신청인 광창원) 건은 신청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진실규명대상자의 동생을 조사하였고, 사건번호 다-8355호(신청인 김예순) 건은 신청인이 와병 중이므로 신청인의 딸을 조사하였다.

2) 참고인 조사

가) 경찰 측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비군인참전사실확인 신청서」³⁰⁾를 토대로 전쟁 시기에 전북지역 각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참전경찰 23명과 전주형무소 형무관 1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관련 유족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기간에 접수를 하지는 못했으나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하였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유족 10명에 대해 신청인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된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경위에 대해 사건을 목격하였거나 전문(傳聞)을 통해 알고 있는 31명에 대해 신청인 측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기타 사건관련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현장 목격자, 현장 인근 거주자, 지역 향토사가 등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현지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이 주장하는 사건현장 22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30) 국방부, 「비군인참전사실확인 신청서」.

II.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가. 국민보도연맹 전라북도연맹의 조직

진실화해위원회는 자료조사와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국민보도연맹 전라북도연맹(이하 '전북도연맹')의 조직구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북도연맹 혹은 전북지역 각 시·군 연맹의 조직결성 관련 자료나 증언은 많지 않았다.

다만 1949년 11월 27일 치안국장이 발표한 자수자 수가 전북의 경우 1,660명이라고 하고,³¹⁾ 같은 해 11월 30일 보도된 “남로당원 자수기간 동안 전북도 내의 전향자 수가 3,088명에 달하여 자수기간을 연장한다”³²⁾는 기사를 근거로 전북도연맹에 가입한 보도연맹원의 수가 최소 3,000여 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전북도연맹 조직결성에 관한 자료는 1949년 12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가 유일하다. 이 기사는 “민국에 충성을 맹세-전북보련, 대통령에 뗏세-지”라는 제하의 기사에 ‘전북좌익계열 전향자들은 지난 15일 전북보도연맹선포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전북도연맹 결성식이 1949년 12월 15일에 있었던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나 전북도연맹 가입자 수, 간사장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기사는 계속해서 ‘이 대회석상에서 동(同)연맹원 일동은 이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뗏세-지」를 보내는 동시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라면서 메시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1949년 12월 19일, 동아일보도 “전북보련맹원들이 ‘괴뢰집단을 박멸’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대통령께 전달했다”라고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전북도연맹 산하 각 시·군연맹의 조직결성에 대한 자료로는 부안군연맹 결성과 관련된 신문기사가 유일하다. 이 기사에는 부안군연맹은 1950년 1월 12일 “군내 자수자 167명을 비롯하여 내빈 등이 참석하여 결성선포대회를 가졌으며, 이사장은 부안검찰청장 신도중, 명예지도위원장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김완규, 지도위원은 한청군단장 신기원 외 25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³³⁾

31) 동아일보, 1949.12.2

32) 국도신문, 1949.12.6.

33) 연합신문, 1950.1.18

한편 개인 회고록에 부안군 백산면의 보도연맹 조직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회고록에는 백산면의 보도연맹 조직책임자는 ‘김○○’, 총무는 ‘전 某(모)’씨였으며 전체 가입자 수는 알 수 없으나 전쟁 발발 후 약 10여 명이 살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연맹원들은 직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입회비를 내야 했다고 한다.³⁴⁾

따라서 전북도연맹은 1949년 12월 15일에 결성되었고, 각 군연맹은 1949년 12월 이후에, 각 읍·면연맹의 경우에는 1950년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국민보도연맹 가입경위 및 활동

1) 보도연맹 가입 여부 및 가입경위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대상자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조사와 신청인·참고인 조사를 하였다. 국민보도연맹에서 규정한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좌익전향자’였다.³⁵⁾

참전경찰 출신 참고인들은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모두 다 좌익활동을 한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들도 일부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좌익활동을 인지하고 있었고 좌익활동 경력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좌익활동 경력을 모르거나 강력히 부인하기도 하였고, 보도연맹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신청인 성종철(다-9648호), 신청인 이상준(다-2020호), 신청인 김대영(다-486호), 신청인 한금배(다-7833호), 신청인 고흥곤(다-5499호), 신청인 안진태(다-8543호)는 진실규명대상자가 좌익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되어 살해되었다고 하였고, 신청인 한점녀(다-10144호)는 진실규명대상자가 폭력사건으로 남원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살해되었다고 하였다.³⁶⁾

일부는 진실규명대상자가 다른 사람 대신에 살해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리(익산)지역 신청인 이봉순(다-9964호)은 진실규명대상자가 경찰이 찾던 사람과 이름이 비슷하여 연행되었다고 하였고, 부안지역 신청인 손정훈(다-5707호)은 진실규명대상자가 좌익활동을

34) 정진석,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서출판 밝, 2002.

35) 동아일보, 1949.4.23 ; 조선일보, 1949.11.20

36) 신청인 성종철 통화보고서(2008.10.21) ; 신청인 이상준 진술조서(2008.4.10) ; 신청인 김대영 진술조서(2008.7.10) ; 신청인 한금배 진술조서(2008.9.24) ; 신청인 고흥곤 진술조서(2008.7.8) ; 신청인 안진태 진술조서(2008.11.11) ; 신청인 한점녀 진술조서(2008.9.4).

하였던 백부 손기업을 대신해서 잡혀가 죽었다고 진술하였다.³⁷⁾

신청인 채무길[다-6828(1)호], 참고인 임명근(다-7676호), 신청인 김해균(다-8506호)은 진실규명대상자가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좌익혐의자라는 이유로 살해되었다고 하였다.³⁸⁾

신청인 정철환(다-7106호), 신청인 정동조(다-9426호), 신청인 이순태(다-8407호), 참고인 곽인수(다-10139호), 신청인 최서균(다-10274호), 신청인 길준섭(다-6505호), 참고인 김진춘(다-6506호), 참고인 윤홍윤(미신청), 신청인 이상기(다-7100호), 참고인 이혁기(다-8794호), 신청인 최기원(다-6795호), 참고인 김영길(다-1019호), 신청인 민영기(다-564호), 신청인 정영관(다-1283호, 다-2646호), 신청인 이덕구(다-8508호), 신청인 양원진(다-6779호), 신청인 김신정(다-8046호), 참고인 강태식(미신청), 참고인 박석규(미신청), 참고인 권경노(미신청)는 진실규명대상자가 해방 후에 건준이나 인민위원회, 남로당, 농민조합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거나, 형무소에서 출소한 이후, 혹은 자·타의에 의해 좌익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하였다.³⁹⁾ 이 중 일부는 해방 후 전북지역에서 발생했던 ‘지서습격사건’으로 알려진 2·6사건⁴⁰⁾과 3·22사건⁴¹⁾ 관련자도 포함되

37) 신청인 이봉순 통화보고서(2008.8.8) ; 신청인 손정훈 진술조서(2008.7.10). 이 중 신청인 손정훈의 백부 손기업이 1947년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38) 신청인 채무길 진술조서(2008.3.6) ; 참고인 임명근 통화보고서(2008.11.11) ; 신청인 김해균 진술조서(2008.7.8).

39) 신청인 정철환 진술조서(2008.8.26) ; 신청인 정동조 진술조서(2008.8.30) ; 신청인 이순태 진술조서(2008.7.9) ; 참고인 곽인수 통화보고서(2008.8.6) ; 신청인 최서균 진술조서(2008.7.8) ; 신청인 길준섭 진술조서(2008.8.28) ; 참고인 김진춘 진술녹취록(2008.8.18) ; 참고인 윤홍윤 진술녹취록(2008.8.18), 면담보고서(2008.10.30) ; 신청인 이상기 진술조서(2008.7.10) ; 참고인 이혁기 진술조서(2008.9.2) ; 신청인 최기원 진술조서(2008.7.10) ; 참고인 김영길 진술조서(2008.8.29) ; 신청인 민영기 진술조서(2008.7.9) ; 신청인 정영관 통화보고서(2008.7.1) ; 신청인 이덕구 진술조서(2008.7.9) ; 신청인 양원진 진술조서(2008.8.30) ; 신청인 김신정 진술조서(2008.8.28) ; 참고인 강태식 진술조서(2008.8.28) ; 참고인 박석규 진술조서(2008.7.8) ; 참고인 권경노(2008.7.2). 이 중에서 신청인 김신정(다-8046호)의 부 김태욱이 해방 후 옥구군 미면 건준과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월간 말』지 1989년 2월호에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하였다(월간 말, 『속 보도연맹 사건』, 1989년 2월호, 46쪽).

40) 『전북경찰60년사』에는 이 사건을 ‘2·7폭동’이라고 명명하고 1948년 2월 7일 민전이 주도한 폭동의 일환으로 전북에서 경찰관서가 습격되고 전선과 전화선이 단절되었으며 기관차 파괴사건 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전북경찰60년사』, 전북지방경찰청, 2005, 22쪽).

41) 1947년 3월 2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농민사건이다. 1947년 3월 22일 남로당의 주도로 전국에서 24시간 총파업이 있었는데 부안에서는 군민항쟁 형태를 이루었으며 이를 계기로 수천 명이 전주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었다고 한다. 당시 지서를 불태운 곳도 있고 두 명의 경찰이 군중들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1947년 3월 22일 부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부안독립신문, 2008년 3월 14일자(170호)에서 주요내용을 발췌함]. 그런데 『전북경찰60년사』에는 이 사건을 ‘부안 줄포 사건’으로 명명하고 1948년 3월 20일, 부안경찰서 줄포지서는 ‘면내 좌익청년들이 주민들을 선동하여 다음날 21일에 경찰관서를 습격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줄포지서장 등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수집 중 경찰 3명이 타살되었고,

제 3 권

어 있었다.⁴²⁾ 그러나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좌익단체 가입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 지인의 권유에 의해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마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 정읍지역 신청인 중 7명은 정읍군(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군룡마을 주민들로서 진실규명대상자들의 보도연맹 가입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회의 도중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좌익관련 회의였다고 관할지서에 신고를 하여 회의 참가자들이 정읍경찰서에 구속된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같은 마을 신청인 중 선동엽(다-8354호, 다-8357호)은 당시 회의 참가자들이 모두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⁴³⁾ 조사결과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판결문에서 상기 군룡마을 출신 진실규명대상자 7명 중 5명이 1947년과 1948년에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을 발견하여 이들 모두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 가입대상이 '좌익전향자'라는 원칙에 부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 진술 외에 진실규명대상자 54명의 과거 좌익활동 여부를 확인코자 판결문 등 행형기록을 조사하였고, 이 중 11명의⁴⁴⁾ 자료를 확인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1948년~1950년 초반까지 국가보안법, 포고 제2호 위반 등의 죄목으로 복역했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안군 진실규명대상자 최순환의 경우 일제강점기인 1934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항일운동전력이 확인되었다.⁴⁵⁾

결국 진실규명대상자의 일부는 좌익활동 후 자수·전향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일부는 좌익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지인의 권유로 좌익단체 등에 가입하였다가 불법화되자 자수한 후 자연스럽게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되어 희생된 사람이 전부 보도연맹원은 아니었다. 즉 보도연맹에 가입되지 않았는데도 예비검속되었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검속되었거나, 심지어 일반 사건으로 구속 중이었던 사람까지도 검속되어 사살되었다.

21일 아침에 무장한 좌익청년과 마을 주민들이 줄포국민학교에 집결하자 경찰 50여 명이 신속히 출동하여 폭동을 진압하고 주동자들을 검거하였다고 하였다. (『전북경찰60년사』, 전북지방경찰청, 2005, 22쪽).

42) 진실규명대상자 민영술은 2·6사건으로, 최순환은 3·22사건 관련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했다고 하였다.

43) 신청인 선동엽 진술조서(2008.9.1) ; 신청인 남궁대성 진술조서(2008.7.7) ; 신청인 황백용 진술조서(2008.7.7) ; 신청인 주경렬 진술조서(2008.7.7) ; 신청인 추화순 진술조서(2008.7.7).

44) 신청인 민영기는 형 민영술이 2·6사건으로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신청인 민영기 진술조서, 2008.7.9) 민영술의 행형기록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2) 보도연맹 활동

신청인들은 대체로 진실규명대상자들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후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일부는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기억했다. 특히 김제지역 신청인 이순태(다-8407호)는 형 이석환이 김제군 백산면 보도연맹위원장이었고 백산지서 옆에 있었던 흥복사에 보도연맹 사무실이 있어서 매일 지서와 보도연맹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기억하였다.⁴⁶⁾ 김제지역 신청인 최서균(다-10274호)은 부 최남석이 보도연맹에 가입한 후로 3·1절 혹은 8·15 때 김제경찰서 유치장에 약 20일 정도 예비검속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⁴⁷⁾

익산지역 신청인 정영관(다-1283호, 다-2646호)은 부 정진호가 수시로 함열지서에 불려가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⁴⁸⁾ 임실지역 참고인 박석규(미신청)는 본인이 국민학교 5

〈표 2〉 진실규명대상자 행형기록 조회결과

연번	지역	사건번호	대상자	판결번호	판결년월일	죄명	형량	법원
1	군산	다-6828(1)	채기묵	형공 제205호	1948.4.1.	포고제2호위반	벌금2천원	전주지방심리원
2	김제	다-8407	이석환	형공 제256호	1948.5.12.	포고제2호위반	징역1년/ 집유2년	전주지방심리원
3	김제	다-10139	곽삼주	형사사건기록 1949형 제622호	1949.4.20.		불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집행과
4	무주	다-6505	길상교	형□공가 제50호	1949.2.28.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2년/ 집유5년	대구지방고등법원
5	부안	다-6795	최순환	형공 제698호	1934.7.12.	치안유지법 위반	징역2년/ 집유5년	대구복심법원
6	부안	다-8404	은갑동	형공 제498호	1947.7.17.	포고제2호위반	징역10월/집 유2년	전주지방심리원
7	정읍	다-8357	선학권	형공 제158호 형공 제326호	1947.5.8. 1948.7.15.	포고제2호위반 포고제2호위반	벌금4천원 벌금3천원	전주지방심리원 전주지방법원
8	정읍	다-8355	배동현	형공 제326호	1948.7.15.	포고제2호위반	벌금3천원	전주지방법원
9	정읍	다-8358	황천용	형공 제326호	1948.7.15.	포고제2호위반	벌금3천원	전주지방법원
45)	정읍	다-9833	주명렬	형공 제158호	1947.5.8.	포고제2호위반	벌금2천원	전주지방심리원
				형공 제326호	1948.7.15.	포고제2호위반	벌금3천원	전주지방법원
11	임실	미신청	박병량	형공 제693호	1947.9.19.	포고제2호위반	징역6월/ 벌금5백 원/ 집유2년	전주지방심리원

46) 신청인 이순태 진술조서(2008.7.9).

47) 신청인 최서균 진술조서(2008.7.8). 전 남로당원이었던 전주(완주)지역 참고인 이○○도 해방 후부터 전쟁 발발 이전 시기에 3·1, 8·15, 여순사건 당시에 예비검속이 되어 약 20일간 전주경찰서 유치장 혹은 전북 지방경찰국 유치장 등에 구금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이○○ 면담보고서, 2008.9.4).

제 3 권

학년 즈음 보도연맹가를 배웠다고 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모두 모여라… 빛나는 보도연맹 깃발 아래로…”라는 가사였다고 하였다.⁴⁹⁾

요컨대 진실규명대상자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이후로 가끔 지서와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에 참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일부는 3·1, 8·15 행사 등이 있을 때 예비검속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전쟁 발발 후에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경찰에 의해 소집되거나 연행되었을 때 별다른 의심 없이 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사건경위

가. 전주(완주)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전주(완주)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 건은 1건이다. 신청인 정철환(다-7106호)에 따르면 진실규명대상자인 모 차대회는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에 있던 보도연맹 중앙본부 부녀부장⁵⁰⁾으로 활동을 하다가 전쟁 발발일 즈음 전주여자중학교 교사로 발령이 나서⁵¹⁾ 전주로 내려오게 되었으며, 곧바로 예비검속이 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서울에 거주하였던 신청인은 어머니의 비서(성명 미상)로부터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곧바로 전주로 내려왔으나 어머니가 거주하였던 여관 주인의 만류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비서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어머니와 비서는 전주여자중학교에 며칠간 근무를 하였는데 어느 날 숙소로 찾아온 경찰에게 연행되어 전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

48) 신청인 정영관 통화보고서(2008.7.1).

49) 국민보도연맹 기관지 『애국자』 창간호에 ‘국민보도연맹가(작사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선정, 작곡 현제명)’의 가사와 악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가사 일부(1절 마지막 가사-피끓은 우리동지 모두 모아자 빛나는 보도연맹 깃발 밑으로)와 참고인이 진술한 가사가 대동소이하게 일치하였다. 『국민보도연맹중앙본부 기관지 『애국자』 창간호 분석보고』(조사3팀-298, 2007.12.11.) 참조. 참고인 박석규 진술조서(2008.7.8).

50) 신청인은 모 차대회가 보도연맹 중앙본부 부녀부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부친이 사찰계 형사로서 오제도 검사와 친분이 있어 차대회로 하여금 ‘좌익의 물을 씻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시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정철환 진술조서, 2008.8.26).

51)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여자고등학교(당시 전주여자중학교)에 차대회의 재직사실 확인을 의뢰하였으나[『재직사실 확인요청』(조사3팀-845호, 2008.11.12)], 1960년 전주여자중학교의 화재로 재직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재직사실 확인내용 알림』(전주여자고등학교-5441호, 2008.11.14)].

었다고 한다. 며칠 후 경찰은 수감자들을 모두 불러내어 30세 미만의 여자들만 분류하여 귀가조치시켜 비서는 석방되었으며 나머지는 트럭에 실려 나갔는데 그 후로 총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였다. 전주에 있던 여관 주인도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전하며 피난을 권하였기 때문에 시신수습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나) 자료 및 참고인 조사

『말』 1988년 12월호와⁵²⁾ 신경득의 『조선중군실화로 본 민간인학살』⁵³⁾에서는 증언과 자료를 기초로 전주시 보도연맹원 수백 명이 ‘황방산’과 ‘소리개재’에서 총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지 2003년 5월호는 이도영 박사가 발굴한 ‘전주형무소 학살 사진’과 신경득이 제공한 위 기사를 근거로 하여 유족들과 전주형무소 형무관 등을 취재하여 사실 여부를 취재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⁵⁴⁾

참고인 조사 결과 당시 전북지방경찰국 사찰과에 근무한 전○○(당시 30세)의 진술은 중요하였다. 전○○에 따르면 “각 경찰서에서 다루기 힘든 거물급들은 도경 유치장에 검속되어 있었고 전주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예비검속자들도 대부분 도경으로 이송되었다. 도경 유치장은 12개 방이 있고 한 방마다 20~3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꼭 차면 350명까지 있었다. 도경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들 중에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중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보도연맹원들은 구금기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여름철이라 덥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에 유치장 안에서 자연사한 사람이 많았다”고 하였다.⁵⁵⁾

살해경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검속한 보도연맹원들 중 우두머리 급들을 도경에서 인수했는데 후퇴가 임박해서는 이송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처리하였다. 처음에는 갑종들을 먼저 죽이고 후퇴할 무렵에는 다 죽였다. 도경 유치장에 있던 보도연맹원들 살해장소는 여러 곳인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휘관(사찰3계장 김○○)이 선정하였으며 주로 야산이 많았던 완주군 동상면을 이용하였고 이외에도 정읍 내장산 골목에서도 일부 죽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황방산의 경우 후퇴 직전에 처리했을 가

52) “전북 전주에서는 국군이 후퇴하던 7월 20일까지 경찰과 특무대원(CIC)들이 보련맹원들의 집을 뒤져 끌고 갔다고 당시 전주에 살았던 이모씨는 이야기한다. 군·경이 끌려간 사람들을 전주시 황방산에 구덩이를 파놓고 총살했다” 『말』, 해방후 최대의 양민참극 보도연맹 사건, 1988년 12월호, 25쪽.

53) 신경득, 『조선 중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 살림터, 2002, 162~172쪽.

54) 월간 『말』, ‘발굴특종, 1950년 전주형무소 정치범 집단처형, 흩어진 퍼즐 위엔 학살이 새겨져 있었다’, 2003년 5월호, 54~63쪽.

55) 참고인 전○○ 면담보고서(2008.11.18).

제 3 권

능성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 사살행위를 비밀리에 하기 위해 우익진영을 동원하여 구덩이를 파게 했고 주로 밤에 트럭을 이용해서 이동하였으며 며칠 동안 죽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한편 후퇴를 전후로 해서는 다급해서 유치장에서 사살한 경찰서도 더러 있다고 하였다.⁵⁶⁾

전쟁 발발 당시 전주형무소 형무관으로 근무했던 참고인 이○○은 “전주지역 보도연맹원들은 각 경찰서나 후미진 창고 등에 구금되었다가 산골짜기 등지에서 경찰에 의해 집단사살되었다. 보도연맹원들은 한 장소에서 희생된 것이 아니라 전주시 화산동 소재 강당재, 전주시 효자동 일대, 완주군 상관면 일대, 완주군 동상면 일대, 전주시 덕진동 소재 건지산, 완주군 용진면 소리개재 등 주로 야산 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⁵⁷⁾

해방 후 전주시 남로당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참고인 이○○은 자신의 경우 보도연맹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해방 후부터 3·1, 8·15, 여순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예비검속을 당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전쟁 발발과 동시에 피신하여 예비검속을 피하였지만, 전주경찰서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들은 황방산 중턱에서 집단살해당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⁵⁸⁾ 참고인 김○○(전쟁 발발 당시 완주군 조촌면 거주, 수복 후 정읍경찰서 소성지서 근무)도 전주(완주) 보도연맹원이나 전주형무소 재소자들이 황방산 밑 골짜기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⁵⁹⁾

참고인 성○○(36전투대 근무)는 전주지역 보도연맹원들이 진안 가는 길에 있는 소리개재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⁶⁰⁾

참고인 소○○(수복 후 전주경찰서 18전투대 근무)은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하여 전주형무소에 구금시켰다가 죄과에 따라 사형을 시켰다고는 들었으나 사살 장소는 모르겠다고 하였다.⁶¹⁾ 참고인 유○○(수복후 전주경찰서 구이지서 근무)은 전쟁 발발 후에 보도연맹원들이 집단사살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희생장소 등 희생경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였다.⁶²⁾

요컨대 참고인 진술 및 자료를 통해 전주(완주)지역 보도연맹원 희생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완주군 동상면 일대,⁶³⁾ 소리개재,⁶⁴⁾ 황방산,⁶⁵⁾ 전주시 화산동 강당재, 완주군 상관

56) 참고인 전○○ 면담보고서(2008.11.18).

57)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08.12.11).

58)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08.9.4).

59)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11.19).

60) 참고인 성○○ 통화보고(2008.12.8).

61) 참고인 소○○ 면담보고서(2008.10.14).

62) 참고인 유○○ 면담보고서(2008.11.19).

면 일대, 전주시 효자동 일대, 전주시 덕진동 건지산 등이다. 이 중에서 참고인 이○○(전주형무소 형무관 근무)가 진술한 전주시 강당재, 효자동 일대, 건지산, 완주군 상관면 일대 등은 관련 자료나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희생장소로 특정하지 못하였다.

다) 현지조사

먼저 참고인 전○○(전북도경 사찰과 근무)와 이○○(전주형무소 형무관 근무)가 살해 장소로 지목한 완주군 동상면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동상면 일대가 대부분 야산이어서 사살현장을 특정할 수 없었다.⁶⁶⁾ 그러나 참고인들의 진술대로 완주군 동상면에 야산과 골짜기가 많아 보도연맹원 살해장소에 적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1950년 8월 21일자 『민주조선』과 참고인 성○○(36전투대 근무)가 살해현장으로 지목하고 있는 ‘솔개재(혹은 소리개재)’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이 장소는 현재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당시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의 야산으로서 진안-전주간 (구)도로 바로 옆산이었다. 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이○○(올해 68세)은 이 장소를 소리개재라고 불리며 사살현장은 교회 뒤쪽 밭이라고 하였다. 이○○은 소리개재 사건을 ‘빨갱이라고 붙잡혀서 갇혀 있던 사람들을 경찰들이 후퇴하면서 죽인 사건’이라고 알고 있고, 살해 당시 한 명이 살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신원은 모르겠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도연맹원들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진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당시 완주군 우전면 효자리) 황방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 이 산의 사살장소는 현재 일부가 효자추모관(납골당)으로 개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곳은 2003년경 유족과 언론사에서 현장조사 당시 일부 지점에서 유골을 확인한 바 있다.⁶⁷⁾

63) 완주군 동상면 일대는 참고인 전○○(전북도경 사찰과 근무)와 이○○(전주형무소 형무관 근무)가 희생장소라고 진술하였다.

64) 소리개재는 1950년 8월 21일자 『민주조선』 보도 : 참고인 성○○(36전투대 근무), 참고인 이○○(전주형무소 형무관 근무), 참고인 이○○(소리개재 인근 거주자)이 희생장소라고 진술하였다.

65) 황방산은 1950년 8월 21일자 『민주조선』 보도 : 참고인 이○○(전 전주시 남로당원), 참고인 김○○(전쟁 발발 당시 완주군 거주)이 희생장소라고 진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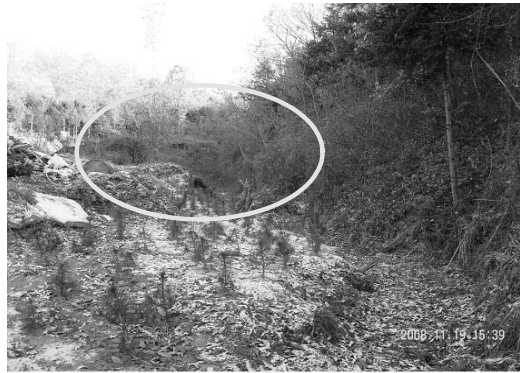
66) 동상면 거주 노인들을 탐문한 결과, 동상면이 야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은거중인 빨치산에 대한 군경토벌 작전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경우가 많았으나 보도연맹 사건은 모르겠다고 하였다.

67) 한국현대사회연구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유해 매장 추정지 조사 최종보고』, 2007 : 새 전북신문(2003.4.16), 『전주형무소 사상범 대량학살장소 발견』에 따르면 “유골이 발견된 곳은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에서 형무관으로 근무하며 대량학살을 지켜보았다는 이모씨 등 2명이 집단학살 후 매립한 장소를 지목한 곳이다. 전주 황방산 부근에서 이뤄진 유골발굴은 지난 14일 이뤄졌고, 유전자감식을 위해 일부 유골만 수습한 상태다”고 보도하고 있다. : 『월간 말』 (2003년 5월호) 『흩어진 퍼즐 위엔 학살이 새겨져 있었다』 제하의 글에서 2003년 4월 14일 황방산 기슭인 납골당 뒤쪽 야산에서 유골의 일부를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03년 현장조사에 동행했던 이○○는 본인이 사살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유골 일부

[사진 1] 소리개재 원경



[사진 2] 소리개재 골짜기



[사진 3] 황방산



요컨대 신청인 및 참고인, 자료, 현지조사 결과 전쟁 발발 직후 전주경찰서와 전북지방경찰국 소속 경찰들은 보도연맹원 및 좌익혐의자 등을 예비검속하여 유치장 등에 구금시켰다. 그 후 경찰은 구금자들을 좌익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분류한 후 후퇴하기 전까지 완주군 동상면 일대 야산 골짜기,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소리개재, 완주군 우전면(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황방산 골짜기 등에서 집단사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를 확인하였으며 다시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이○○ 진술녹취록, 2008.12.11).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전주(완주)지역 보도연맹원 희생자의 수는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다. 자료에서는 ‘수백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고,⁶⁸⁾ 참고인 전○○는 도경 유치장에 구금된 수가 350여 명 정도라고 진술하였다.⁶⁹⁾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언이나 자료가 없어서 전주 지역에서 보도연맹원이거나 예비검속되어 희생된 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며 또한 희생자 개개인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차대희의 경우 가족이 희생장소를 모르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차대희가 보도연맹 중앙본부에서 부녀부장을 했다는 진술, 신청인 본인이 어머니와 함께 보도연맹 중앙본부 내에서 약 한 달간 숙식을 했다는 진술, 그리고 같이 연행되었다가 석방된 비서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차대희의 연행 및 희생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또한 참고인 정중길(차대희의 시조카, 당시 10세)이 숙모인 진실규명대상자가 전주에서 교사를 하다가 전쟁 직후에 경찰에 끌려간 이후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므로⁷⁰⁾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였던 차대희(車大禧, 당시 38세)는 이 사건으로 희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전주(완주)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사살은 대체로 경찰과 국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 발발 당시 전북도경 사찰과에 근무했던 참고인 전○○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내무부 치안국으로부터 보도연맹원 검속 지시가 여러 차례 도경에 하달되었다. 예비검속 등에 관한 지시는 전통(전화통지)으로 오는데 암호로 오기 때문에 같은 직원이라도 모를 수 있다. 도경은 예비검속 결과를 수시로 답하였는데 이런 지시는 전국 공통사항이다. 사살 명령을 내릴 때는 치안국에서 사살일자과 피살자 등의 이름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 예비검속자들을 처치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면 일선에서 알아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각 경찰서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일례로 전북도경 사찰과장이었던 나○○은 본인이 전라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가급적 희생자를 덜 만들기 위해 애를 쓴 사실

68) 전주지역 희생자 수에 관해 『말』지 기사는 수백 명으로, 북한 측 신문자료는 천여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9) 참고인 전○○ 면담보고서(2008.11.18).

70)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08.11.13).

제 3 권

이 있다. 전북도경 사찰과는 3계까지 있었고 1계는 서무, 2계는 정보, 3계는 대공 관련이어서 주로 3계에서 보도연맹원 처리를 하였다. 또한 전주에는 CIC와 헌병대가 있었고, 좌익의 우두머리 급들을 처리할 때는 국군이 관여를 했으나 대부분은 경찰서 단독으로 처리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⁷¹⁾

참고인 이○○(전주형무소 형무관 근무)는 전주형무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은 당시 전주시에 주둔하였던 7사단 3연대 소속 국군과 헌병대에게 사살되었는데, 보도연맹원은 경찰이 사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⁷²⁾

참고인 소○○(수복 후 전주경찰서 18전투대 근무)은 당시 전주에 헌병대와 CIC 사무실이 있었으나 그들이 보도연맹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⁷³⁾

전주형무소 형무관 출신 참고인 이○○는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를 7사단 3연대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보도연맹원 사살에 관여한 헌병대 또한 7사단 소속 군인이었다고 추정된다. 자료조사 결과 전쟁 발발 당시 호남지역에 주둔하였던 국군은 5사단이었고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전주에는 제15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⁷⁴⁾ 전쟁이 발발하자 제5사단과 제7단 등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서울 인근에서 지연전을 전개하였으나 대부분의 병력이 분산되어 해체되었다.⁷⁵⁾ 한편 제7사단도 7월 5일 해체되고 사단사령부는 대전-이리-전주로 이동하게 되는데 7월 10일 제7사단은 전주에서 학도병 500명을 보충받아 제3, 제9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을 재편하고 7월 14일 민부대로 개칭되어 용안, 전주, 임실, 남원, 운봉, 함양등지로 철수한 사실이 확인된다.⁷⁶⁾ 따라서 이○○의 진술대로 당시 전주시에 주둔하였던 헌병대는 7사단 소속⁷⁷⁾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전쟁 발발 직후 전북지방경찰국과 전주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내무부 치안국의 사살 명령에 따라 전북지방경찰국(국장 윤○

71) 참고인 전○○ 면담보고서(2008.11.18).

72) 참고인 이○○ 진술녹취록(2008.12.11).

73) 참고인 소○○ 면담보고서(2008.10.14).

74) 제5사단은 전주에 주둔한 제15연대와 송정리에 주둔한 제20연대, 함양에 주둔한 독립대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75) 제5사단은 7월 17일 사단이 해체되었다가 10월 8일 대구에서 재창설되었다.

76) 『한국전쟁간 연대급 이상 부대 예배속 변천』,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자료실 ‘한국전쟁사’에서 인용, <http://www.army.mil.kr/history>. 한편 제7사단은 8월 20일 대구에서 재편성되었다.

77) 헌병대의 7사단 내 소속은 확인할 수 없다. 자료에 따르면 1949년 3월 군기대에서 개칭된 헌병대는 1949년 5월 여단이 사단으로 승격된 후 사단 헌병대를 두었고, 예하 3개 연대 헌병대를 편성하였다. 1950년 8월 1일에서야 연대 헌병대는 배속 해제되고 사단에 예속·통합시키는 한편, 연대에는 헌병을 파견하였다(육군본부, 『육군헌병약사』, 1969년, 99쪽.).

○, 경무관), 전주경찰서(서장 강O, 총경) 소속 사찰담당 경찰들의 주도 하에 사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자료 및 참고인 전○○의 진술을 근거로 볼 때 보도연맹원 사살 당시 전주지역에 주둔하였던 헌병대와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전주지구 CIC 대원들도 사살과정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요약

신청인 및 참고인, 자료조사 결과 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전북지방경찰국과 전주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시켰다. 이들은 좌익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분류된 후 내무부 치안국의 사살 명령에 따라 1950년 7월경부터 후퇴하기 전까지 전북지방경찰국[국장 윤○○(1950.4.27~1950.7.27), 경무관], 전주경찰서[서장 강O(1949.10.15~1950.9.30), 총경] 소속 사찰담당 경찰들과 전주에 주둔하였던 국군 헌병대,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전주지구 CIC 대원들에 의해 완주군 동상면 일대 야산골짜기,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현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소리개재, 완주군 우전면 효자리(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황방산 골짜기 등에서 다수가 사살되었고 희생자 중에서 차대희(車大禧, 당시 38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나. 이리(익산)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이리(익산)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 건은 8건인데 신청인 정영관(다-1283호, 다-2646호)이 동일한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해 2회 신청하였기 때문에 진실규명대상자는 7명이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기간 마감 후 미신청 유족 참고인 3명이 진실규명을 요청하여 이리(익산)지역 사건으로 총 10명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리(익산)지역 사건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망장소에 따라 크게 2개의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전쟁 발발 후 이리(익산)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이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일부는 완주군 화산면에서, 일부는 정읍군 내장산 골짜기 등에서 살해되었는데 완주군 화산면 사건이 먼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비검속 및 희생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신청인 및 참고인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민영기(다-564호)의 매형이자 시신수습자였던 참고인 장인복(당시 21

제 3 권

세)은 “(진실규명대상자) 민영술이 삼기지서에 호출되어 집을 나간 후 1950년 7월 9일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새터부락 옆에서 사살되었다. 본인이 현장에 가보니 시신들은 큰 구덩이 하나에 묻혀 있었고 주변은 유족들로 인산인해였으며 화산면 거주자로부터 약 70여 명이 7월 9일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⁷⁸⁾ 신청인 이덕구(다-8508호)는 부 이종규가 이리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7월 9일 완주군 화산면에서 약 75명과 함께 사망하였고 가족이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하였다.⁷⁹⁾ 신청인 김석환(다-9967호)은 부 김동군이 성당지에서 순경에 의해 연행된 후 바로 이리경찰서로 이송되어 7월 9일 완주군 고산면에서 사살당하였고 시신은 수습하였다고 하였다.⁸⁰⁾ 신청인 김해균(다-8506호)은 형 김원용이 이리경찰서 사찰계 형사들에게 연행된 후 이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1950년 7월 13일 완주군 화산면 야산에서 보도연맹원 77명과 함께 총살되었으며 유품을 보고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하였다.⁸¹⁾

두 번째로 정읍 내장산 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고 하는 사건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주요 진술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정영관(다-1283호, 다-2646호)은 부 정진호가 7월 6일 새벽에 함열지서에서 보도연맹원 모임이 있다고 하여 집을 나갔는데 그 후로 정읍에서 사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이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였다.⁸²⁾

신청인 이상화(다-6359호)와 참고인 이상신(신청인의 숙부, 진실규명대상자의 동생), 참고인 이옥순(신청인의 누나, 당시 12세)에 따르면 진실규명대상자 이길현은 1950년 7월 경 망성면사무소에 회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갔고, 얼마 후 신청인의 어머니가 망성면 사람들이 트럭 1대에 가득 실려 이리경찰서로 이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7월경 정읍 내장산에서 총살되었다고 하였다. 이길현의 시신은 함께 살해된 같은 동네 주민 ‘이○’의 부인(이름미상)이 수습하였는데 ‘이○’의 부인은 사망 소식을 듣고 내장산 골짜기를 찾아다녔으며 시체들이 수북이 쌓인 것을 여러 군데서 보았고 그중 남편과 이길현의 시신이 함께 있어서 같이 수습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의 부인은 현장 주변 마을사람들로부터 며칠 동안 밥을 굶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와 총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하였다.⁸³⁾

78) 신청인 민영기 진술조서(2008.7.9).

79) 신청인 이덕구 진술조서(2008.7.9).

80) 신청인 김석환 진술조서(2008.7.8).

81) 신청인 김해균 진술조서(2008.7.9).

82) 신청인 정영관 통화보고서(2008.7.1).

83) 신청인 이상화 통화보고서(2008.11.10) ; 참고인 이상신 진술조서(2008.8.28) ; 참고인 이옥순 통화보고서(2009.1.8).

신청인 이봉순(다-9964호)과 참고인 최귀관(진실규명대상자의 마을 주민)은 경찰이 다른 사람을 연행하려 했으나 이름이 비슷했던 이수웅이 대신 연행되어 이리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정읍 내장산에서 사살되었다고 하였다.⁸⁴⁾

참고인 권경노(미신청)는 부 권용하가 이리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이리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15일경 이리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정읍 내장산 골짜기에서 총살되었고, 자신은 시신수습을 위해 내장산골짜기에 가서 1개의 구덩이가 파여 있고 약 70구 가량의 시신이 일렬로 눕혀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시신들이 많이 부패되어 있어서 아버지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다고 하였다.⁸⁵⁾ 참고인 이태부(미신청)는 부 이종철이 이리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약 1주일가량 이리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정읍 내장산 골짜기에서 사망했고 사망일은 주변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어서 7월 16일로 알고 있으며 시신은 수습하였다고 하였다.⁸⁶⁾

나) 자료 및 참고인 조사

이리(익산) 보도연맹 사건이 최초로 공개된 자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제보를 근거로 ‘익산 고산리 골짜기에서 보도연맹원 700여 명이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⁸⁷⁾ 위의 기록은 완주군 화산면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⁸⁸⁾

그리고 진실규명대상자 이종규는 제적등본에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7월 9일 시불상(時不詳) 완주군 화산면 화산리 후촌락(뒷마을)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사망일과 사망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적등본도 이리(익산)지역 보도연맹원들이 완주군 화산면에서 사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 권경노(미신청)가 제출한 진실규명대상자 권용하의 제적등본에는 권용하가 ‘단기 4282년(서기 1949년) 7월 1일 정읍군 내장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제적등본은 이리(익산) 보도연맹원의 사망장소가 정읍 내장산임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84) 신청인 이봉순은 당시 나이가 어려 아버지 이수웅의 사망장소를 몰랐으나 참고인 최귀관이 내장산에서 죽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이봉순 통화보고서(2008.8.8) : 참고인 최귀관 통화보고서(2008.11.11).

85) 참고인 권경노 통화보고서(2008.7.2).

86) 참고인 이태부 진술조서(2008.7.9).

8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2005, 66~67쪽.

88) 자료와 일부 신청인들은 희생장소를 고산면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는데 화산면이 광무원년부터 1914년까지는 고산현으로 불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고산면이었다가 화산면으로 개칭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제 3 권

당시 이리경찰서 근무자들도 이 건을 인정하였다. 참고인 이○○(이리경찰서 경리계 근무)은 “이리(익산) 보도연맹원 희생장소는 완주군 화산면과 정읍 내장산 골짜기로 알고 있다. 갑종들은 완주군에서 죽고 후퇴 직전까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후퇴하기 며칠 전 정읍 내장산에서 죽었다. 희생장소는 이리경찰서가 죽일 장소를 미리 선택하여 계획한 것이다”고 하였다.⁸⁹⁾ 참고인 김기순(이리경찰서 경리계 근무)은 진실규명대상자인 김동군의 외조카로서, 김동군의 연행 소식을 듣고 본인이 면회를 시도하였으나 같은 경찰이어도 사상범이라서 면회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 총살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⁹⁰⁾

다) 현지조사

완주군 화산면 사건의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화산면 와룡리 야산고랑, 속칭 번지골짜기임을 확인했다. 즉 화산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643번 지방도로가 번지골짜기 고랑이며 인근에 임전마을(새터마을)이 있었다. 현지조사에 함께 한 참고인 배○○(현장 인근 거주자)는 당시 트럭 한 대에 사람들이 실려와 총살당했으며 희생된 사람들은 이리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보도연맹원이라고 들었다고 하였다.

한편 정읍 내장산 골짜기 사건의 신청인 및 참고인들은 희생장소를 정읍 내장산 골짜기라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인근 마을 거주자들을 탐문하는 과정에 사건현장을 알고 있다는 ‘내장산마을’ 거주자 김○○를 대동하고 현지조사를 하였다. 김○○는 현재 내장산국립공원 제2주차장 앞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모퉁이’로 불린다는 장소를 보도연맹 사건장소로

[사진 4] 번지골짜기



89)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08.11.18).

90) 참고인 김기순 통화보고서(2008.8.5).

특정하였다.

김○○(당시 15세)는 전쟁 직후 바람모퉁이의 구덩이에 30여 구의 시신이 총상을 입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보았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 시신은 총살당한 보도연맹원의 시신이라고 들었다고 하였다. 그는 희생자 개개인 및 가해자의 신원은 알 수 없으나 시신수습자 중에는 정읍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람모퉁이’에서 살해된 사람들은 이리(익산) 보도연맹원들이 아닐 수도 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건 중 정읍 내장산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는 사건은 이리(익산)지역뿐이다. 그러나 전북도경 사찰과에 근무했던 참고인 전○○는 전북도경 유치장에 검속되었던 보도연맹원들 중 일부가 정읍 내장산에서 사살되었다고 하므로 바람모퉁이 사건 희생자들은 각 경찰서에서 이송되어 전북도경 유치장에 검속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거나 다른 지역 사건의 희생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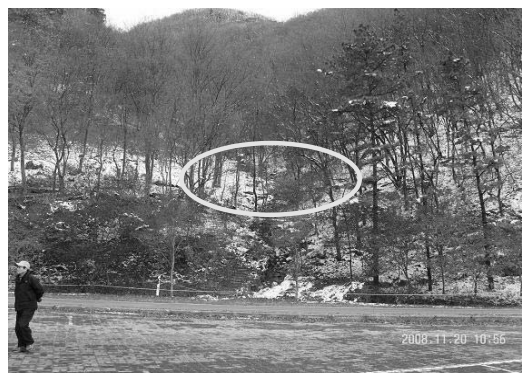
결국 이리(익산) 보도연맹원 희생장소는 구체적인 지점까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정읍 내장산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하는 신청인들의 진술, 진실규명대상자가 정읍 내장산에서 사망하였다는 제적등본 기록, 정읍 내장산에서 이리지역 보도연맹원들이 사살되었다고 하는 이리경찰서 근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내장산국립공원 일대를 희생장소로 확정할 수 있다.

요컨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현지조사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이리(익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전쟁 발발 후에 각 지서 혹은 이리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연행(소집)되어 이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분류된 후 갑종들은 1차로 1950년 7월 9일(음력 5월 24일) 경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번지골짜기에서, 나머지 2차는 7월 15~16일경 정읍군 내장산골짜기에서 집단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번지골짜기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는 시신수습에 참여했거나 전언을 통해 알게 된 진술들을 종합하면 약 7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⁹¹⁾ 그리고 정읍 내

[사진 5] 내장산 입구 바람모퉁이



91) 진실규명대상자 민영술의 시신수습에 참여했던 장인복은 희생자의 수가 70여 명이라고 하였고, 신청인 김

제 3 권

장산 골짜기에서 일렬로 눕혀진 시신이 70구였다는 참고인 권경노(미신청)의 진술, 정읍 내장산 골짜기에 수북이 쌓인 시신들이 여러 곳이었다고 들었다는 참고인 이옥순의 진술 외에는 희생규모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읍 내장산 골짜기에서 사살당한 희생자의 수는 추정할 수 없고, 희생자 개개인의 신원도 확인하지 못했다.

진실규명대상자 10명의 사망사실은 제적부 자료와 참고인 진술로서 확인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 김원용(다-8506호), 정진호(미신청), 이종규(다-8508호)⁹²⁾의 제적부 기록에는 사망일이 각각 1950년 5월 28일(음력), 단기4283년(1950년) 5월 21일(음력), 단기4283년(1950년) 7월 9일로 기록되어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망일(음력)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인 진술로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진실규명대상자 민영술(다-564호)은 참고인 장인복(시신수습자, 당시 21세)이,⁹³⁾ 김동군(다-9967호)은 참고인 김기순(외조카, 당시 21세)과⁹⁴⁾ 참고인 백영기(마을 주민, 당시 20세)가,⁹⁵⁾ 이길현(다-6359호)은 참고인 이상신(진실규명대상자의 사촌동생, 당시 23세)이,⁹⁶⁾ 이수웅(다-9964호)은 참고인 최귀관(마을 주민, 당시 21세)이,⁹⁷⁾ 권용하(미신청)는 참고인 최이분(마을 주민, 당시 20세)이,⁹⁸⁾ 박순용(미신청)은 참고인 강기선(마을 주민, 당시 22세)이,⁹⁹⁾ 이종

해군은 시신수습에 참여했던 작은 형에게 77명이라고 들었다고 하였고, 신청인 이덕구는 화산에서 죽은 사람이 75명이라고 들었다고 하였다.

92) 참고인 이영구(당시 21세)는 5촌 당숙인 이종규가 전쟁 나면서 피해 다니다가 이리경찰서에 잡혔으나 후에 사형되었다고 하였다(참고인 이영구 통화보고서, 2008.11.13).

93) 신청인의 매형 장인복은 신청인 민영기 조사 당시 동석하여 민영술의 사망경위, 시신수습과정에 대해 진술하였다(신청인 민영기 진술조서, 2008.7.9).

94) 참고인 김기순은 이리경찰서 재직 중에 출산휴가를 받고 집에 있다가 이모부 김동군의 사망 소식을 듣고 면회를 시도하였으나 면회가 거부되었고, 나중에 사살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참고인 김기순 통화보고서, 2008.8.5).

95) 참고인 백영기는 당시 진해부대에서 해병대 생활을 하던 중에 본인의 형(백일기)과 김동군이 연행되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휴가 중에 시신수습을 하러 갔었다고 하였다. 백일기의 시신수습은 못하였으나 김동군의 시신은 찾았다고 하였다(참고인 백영기 통화보고서, 2008.11.11).

96) 참고인 이상신은 사건발생 당시 입대 중이었고, 본인 입대 이후에 사촌형인 이길현이 이리경찰서에 끌려가 정읍 내장산에서 사망했으며, 호주머니에 있던 도장을 보고 시신수습을 했다고 하였다(참고인 이상신 진술조서, 2008.8.28).

97) 참고인 최귀관은 이수웅의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이수웅은 당시 이장수로 불렸는데 어느 날 지서 직원이 이장수를 찾았는데 이름이 비슷한 이장수가 대신 잡혀갔고 나중에 내장산에서 시신수습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참고인 최귀관 통화보고서, 2008.11.11).

98) 참고인 최이분은 권용하의 마을 주민으로서 권용하가 이리경찰서 경찰에게 잡혀간 후 정읍 내장산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참고인 최이분 통화보고서, 2008.11.19).

99) 참고인 강기선은 박순용과 한 마을사람으로서 박순용은 지식인이었고 좌익활동 여부는 모르나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경찰이 잡아갔다가 완주군 화산면에서 죽었다고 하였다(참고인 강기선 통화보고서,

철(미신청)은 참고인 이종구(친척, 당시 21세)가¹⁰⁰⁾ 각각 희생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이리(익산) 보도연맹 사건으로 사망한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 중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번지골짜기에서는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301번지에 거주하였던 민영술(閔永述, 당시 27세), 이리시 갈산동에 거주하였던 김원용(金元龍, 당시 43세), 이리시 목천동 342번지에 거주하였던 이종구(李鍾奎, 당시 47세), 익산군 성당면 부곡리 122번지에 거주하였던 김동군(金東群, 당시 29세), 익산군 용안면 송산리 276번지에 거주하였던 박순용(朴順龍, 당시 23세) 등 5명이 희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읍 내장산 골짜기에서는 익산군 함열면 석매리 837번지에 거주하였던 정진호(鄭眞鎬, 당시 35세),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 1034번지에 거주하였던 이길현(李吉賢, 당시 32세),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2번지에 거주하였던 이수웅(李秀雄, 당시 30세), 익산군 북일면 신영리 863번지에 거주하였던 권용하(權龍夏, 당시 38세), 익산군 춘포면 인수리 530번지에 거주하였던 이종철(李鍾喆, 당시 38세) 등 5명이 희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참고인 이○○(이리경찰서 경리계 근무)은 “보도연맹 사건은 예비검속에서 사살까지 이리경찰서장과 사찰계 소속 경찰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살해현장에 이리경찰서장은 가지 않았고, 당시 사찰계장 동병무가 직접 참여하였으며, 사찰계 직원이 20~30명가량 되었으나 필요시 다른 계 소속 경찰들도 살해현장에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⁰¹⁾

참고인 이○○의 진술 외에는 이리(익산) 보도연맹원 희생사건의 가해경위를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증언이 없으나 전쟁 발발 후 이리경찰서 사찰계 소속 경찰들은 내무부 치안국과 전북지방경찰국으로부터 보도연맹원 검속 및 살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예비검속자들을 이리경찰서 유치장에 일정기간 구금시켰다가 번지골짜기와 정읍군 내장산골짜기에서 집단사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요약

조사결과, 전쟁 발발 후 이리경찰서[서장 이○○(1950.3~1950.10.3), 총경] 사찰계 소속

2008.11.17).

100) 참고인 이종구는 이종철의 사촌동생으로서 경찰이 후퇴하면서 정읍 내장산에서 무더기로 사살했다고 들었는데, 이종철의 시신을 어렵게 수습했다고 하였다(참고인 이종구 진술조서, 2008.11.13).

101) 이○○은 당시 이리시에 현병대와 CIC파견대가 있었으나 그들이 관여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이○○ 면담보고서, 2008.11.18).

제 3 권

경찰들은 내무부 치안국과 전북지방경찰국으로부터 보도연맹원 검속 및 살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이리경찰서 유치장 등에 일정기간 구금시켰다.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좌익활동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분류되었고, 갑종들 약 70명은 1950년 7월 9일(음력 5월 24일)경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번지골짜기에서, 나머지 다수는 이리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했던 7월 15~16일경 정읍군 내장산 골짜기에서 집단사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리(익산) 보도연맹원 사건 희생자 전체의 신원은 밝히지 못하였으나 진실규명대상자 10명의 희생사실은 확인하였다. 즉,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번지골짜기에서는 민영술(閔永述, 당시 27세), 김원용(金元龍, 당시 43세), 이종규(李鍾奎, 당시 47세), 김동군(金東群, 당시 29세), 박순용(朴順龍, 당시 23세)이 사살당하였고, 정읍 내장산골짜기에서는 정진호(鄭眞鎬, 당시 35세), 이길현(李吉賢, 당시 32세), 이수웅(李秀雄, 당시 30세), 권용하(權龍夏, 당시 38세), 이종철(李鍾喆, 당시 38세)이 사살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군산(옥구)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군산(옥구)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 건은 5건이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 참고인 1명이 진실규명을 요구하여 군산(옥구)지역 사건으로 6건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진실규명대상자의 예비검속 및 희생경위는 대동소이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들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전쟁 발발 후 지서나 군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군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19일경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후퇴하기 직전 군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사살되었고 진실규명대상자 양수성을 제외하고는 가족들이 모두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고인 안점순[신청인 안진태(다-8543호)의 고모, 진실규명대상자의 여동생]은 진실규명대상자 안명옥의 시신을 군산시 소재 야산에서 수습했다고 하였다.¹⁰²⁾

군산(옥구)지역 사건의 희생경위는 현장생존자인 채판묵(현재 사망)으로부터 사건경위

102) 신청인 고흥근 진술조서(2008.7.8) ; 신청인 양원진 진술조서(2008.8.30) ; 신청인 채무길 진술조서(2008.3.6) ; 신청인 김신정 진술조서(2008.8.28) ; 신청인 안진태 진술조서(2008.11.11) ; 참고인 안점순 진술조서(2008.9.3) ; 참고인 이강수 통화보고(2008.11.13).

를 들었던 참고인 김형희(진실규명대상자 채기묵의 외사촌동생)의 진술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었다. 김형희는 “형제 사이인 채기묵과 채판묵은 각각 군산경찰서 유치장의 3번 방과 7번방에 약 1주일간 구금되었다. 구금되었던 사람들은 구금기간 동안 내내 굶었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어느 날 경찰이 유치장에 있는 검속자들을 향해 차례대로 총격을 가했다. 3번방에 있었던 채기묵은 손이 묶인 채 사살당했고 채판묵은 7번방에 있었는데 후퇴가 임박하여 다급했던 경찰이 나중에는 창살 사이로 바로 총격을 가했기 때문에 채판묵과 신원미상의 1명이 살았다”고 하였다.¹⁰³⁾ 이외 신청인들도 군산경찰서 경찰들이 후퇴한 후 집단살해 소식을 접하고 군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총상을 입은 진실규명대상자의 시신을 각각 수습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진실규명대상자 안명옥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던 안점순은 인민군이 진입하자 김제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 어느 야산 골짜기에 있던 시신들 속에 오빠의 시신을 찾았으며, 본인이 10여 구 가량의 시신들이 방치된 장소 3~4곳을 목격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신수습장소는 신평동으로만 생각될 뿐 구체적인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군산경찰서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중 일부는 군산시 소재 야산에서 사살되었고, 나머지는 희생장소로 이동시키지 못한 채 유치장에서 사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참고인 및 현지조사

당시 군산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참고인들도 군산경찰서 유치장 살해사건을 시인하였다. 참고인 나○○(군산경찰서 구암지서 근무)는 “나를 포함하여 군산경찰서 경찰들은 인민군이 군산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후퇴하였다. 후퇴 직전에 군산경찰서 유치장에 검속되었던 죄익들을 사살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후퇴할 때 동료 경찰들에게 들었다. 그리고 나의 친척집에 세를 든 사람이 통행금지에 걸려 유치장에 있었다가 사상범들과 함께 죽었다는 말도 들었다. 당시에는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다급하여 조사하고 따로 분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였다.¹⁰⁴⁾

참고인 정○○(군산경찰서 경무계 근무, 트럭 운전자)는 자신이 당시 군산경찰서 트럭 운전수로 근무하면서 전쟁 발발 후에 군산에 주둔하였던 소속불상의 헌병대장과 CIC대

103) 참고인 김형희 진술녹취록(2008.10.7). 현장생존자였던 채판묵은 동생 채기묵의 시신을 수습하였고 그 후 인민군점령기에 부역한 혐의로 사살당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다-6828호)하였다.

104) 참고인 나○○ 면담보고서(2008.11.19).

제 3 권

장 등에게 불러 다니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 와보니 경찰서가 텅 비고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혹시나 하고 유치장에 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신음소리가 나서 놀래서 뛰어나왔다고 하였다. 당시 유치장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지하실에서 났던 사람들의 신음소리는 그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들이 낸 소리로 추정되나 죽은 사람들의 신원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였다.¹⁰⁵⁾ 참전경찰 출신 참고인들은 군산경찰서 외에 다른 희생장소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구)군산경찰서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 당시 군산경찰서는 군산시 중앙로 1가에 있었으나 현재 이 자리는 공용주차장으로 변경되었고 군산경찰서는 군산시 경암동으로 이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참고인 안점순이 진실규명대상자의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주장하는 군산시 소재 야산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도연맹 사건의 통상적인 사례를 볼 때,¹⁰⁶⁾ 군산경찰서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중 ‘갑종’에 해당하는 이들은 군산경찰서 유치장 사건보다 이전에 사살되었을 것이며 안점순의 진술대로 군산시 소재 야산에서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근거를 종합하면, 한국전쟁 발발 후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보도연맹원 등 인민군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예비검속하여 군산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였다가 일부는 군산시 소재 야산에서 사살하고 나머지는 인민군의 진입이 임박하자 다른 희생장소를 선택하지 못하여 유치장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6] (구)군산경찰서 터



105) 참고인 정○○ 면담보고서(2008.10.14).

106) 전주(완주)지역 보도연맹 사건 참고인 전○○(당시 전북도경 사찰과 근무)는 “처음에는 갑종들을 먼저 죽이고 후퇴할 무렵에는 다 죽였다. 각 경찰서에 따라 후퇴를 전후로 해서는 다급해서 유치장에서 총을 쏜 곳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참고인 전○○ 면담보고서, 2008.11.18). 또한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면 이리(익산)지역 보도연맹원들은 갑종들은 1차로 완주군 화산면에서, 후퇴 무렵에는 정읍 내장산 골짜기에서 사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안지역 보도연맹원들은 1차는 7월 초순경 개암동 골짜기에서, 후퇴 무렵에는 여론개 골짜기와 후촌 골짜기에서 사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군산(옥구)지역 보도연맹원들도 ‘갑종’의 경우 군산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곳에서 사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현장생존자 채판묵으로부터 당시 군산경찰서 유치장의 감방에 시신이 꼭 차 있었다는 말을 들은 참고인 김형희의 진술 외에 군산(옥구)지역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수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진실규명대상자 6인은 제적등본의 기록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희생자로 확인되었다. 진실규명대상자 고병옥(다-5499호)은 제적등본 상 사망일이 1950년 7월 18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으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인 진술로 확인된 희생자는 다음과 같다. 진실규명대상자 양수성(다-6779호)은 참고인 양갑진(조카, 당시 17세)이,¹⁰⁷⁾ 채기묵[다-6828(1)호]은 참고인 김형희(외사촌동생, 당시 18세)가,¹⁰⁸⁾ 김태욱(다-8046호)은 참고인 김양규(친척)가,¹⁰⁹⁾ 안명옥(다-8543호)은 참고인 안점순(시신수습자, 당시 22세)이,¹¹⁰⁾ 이기문(미신청)은 참고인 강태식(외사촌조카, 당시 11세)이¹¹¹⁾ 사망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즉 군산(옥구)지역 사건 희생자 중에는 6명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옥구군 임피면 월하리 609번지에 거주하였던 고병옥(高炳玉, 당시 36세),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388번지에 거주하였던 양수성(梁洙星, 당시 48세), 옥구군 나포면 주곡리 247번지에 거주하였던 채기묵(蔡基默, 당시 27세), 전북 옥구군 미면 미룡리 126번지에 거주하였던 김태욱(金太郁, 당시 31세), 전북 군산시 둔율동 147번지에 거주하였던 안명옥(安明玉, 당시 35세), 옥구군 옥산면 옥산리 109번지에 거주하였던 이기문(李起文, 당시 29세)이다.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가해주체를 군산경찰서 경찰로 지목하였고 당시 군산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참고인들도 시인하였다. 참고인 나○○(군산경찰서 구암지서 근무)는 당시 군산시에 헌병대와 CIC가 있었으며 이들이 보도연맹원 희생에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지

107) 숙부가 연행된 후 군산경찰서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참고인의 누나가 군산경찰서에 가보았으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참고인 양갑진 통화보고서, 2008.11.11).

108) 참고인 김형희 진술녹취록(2008.10.7).

109) 김태욱이 보도연맹 가입자로서 전쟁 발발 후 군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총살당했다고 하였다.(참고인 김양규 통화보고서, 2008.11.17)

110) 안점순은 오빠가 전쟁 발발 후 연행되어 사망하였으며 군산시 소재 야산에서 본인이 직접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였다.(참고인 안점순 진술조서, 2008.9.3).

111) 강태식은 외삼촌 이기문이 전쟁 발발 후에 연행되었다가 군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였다.(참고인 강태식 진술조서, 2008.8.28).

제 3 권

만 군산경찰서 사찰계 직원들이 사살에 직접 참여했을 것이라고 하였다.¹¹²⁾

참고인 정○○(군산경찰서 경무계 근무, 트럭운전수)는 당시 군산에 헌병대와 CIC,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또 다른 수사기관 등 경찰 외에 3개의 수사기관이 있었으며 헌병대 사무실은 현재 명산동 파출소 자리에, CIC사무실은 금동공원(월명공원) 밑에 있었다고 기억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소속이나 규모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헌병대장은 일등상사였고 CIC 대장은 대위였으며, CIC 대원들 중 본인이 얼굴을 아는 사람은 5명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기관들의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¹¹³⁾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볼 때, 군산경찰서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사살의 직접적인 가해주체는 내무부 치안국과 전북지방경찰국의 지시를 받은 군산경찰서(서장 현○○, 총경) 소속 경찰들로 판단된다. 헌병대와 CIC 소속 국군의 경우 군산시 주둔 사실은 확인되나 가해행위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요약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결과, 전쟁 발발 후 군산경찰서(서장 현○○, 총경) 소속 경찰들은 내무부 치안국에서 전북지방경찰국으로 내려진 보도연맹원 등 인민군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좌익혐의자에 대한 검속 및 살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이들을 군산경찰서 유치장에 일정기간 구금시켰다가 일부는 군산시 소재 야산골짜기에서 집단사살하였고, 나머지는 군산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했던 1950년 7월 19일(음력 6월 5일)경 군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집단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산(옥구)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중 전체 희생자의 수는 확인할 수 없으나 고병옥(高炳玉, 당시 36세), 양수성(梁洙星, 당시 48세), 채기묵(蔡基默, 당시 27세), 김태욱(金泰郁, 당시 31세), 안명옥(安明玉, 당시 35세), 이기문(李起文, 당시 29세)의 희생은 확인되었다.

라. 고창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112) 참고인 나○○ 면담보고서(2008.11.19).

113) 참고인 정○○ 면담보고서(2008.10.14).

고창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건은 1건이고 성종철(다-9648호)이 부 성윤기의 사망경위를 밝혀달라고 하였다. 신청인에 따르면 정읍에서 목수 일을 하였던 성윤기는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귀향하였다가 7월 6일(음력 5월 21일) 여순사건 관련자라는 이유로 고창경찰서에 연행·구금되었고 방장산 인근(신림면 가평리 가평부락으로 추정)에서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¹¹⁴⁾

나) 참고인 및 현지조사

참고인 김○○(고창경찰서 해리지서 동호출장소 근무)은 “고창경찰서가 7월 20일 후퇴하면서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를 덜 만들기 위해 보도연맹원들을 ‘처리’하고 갔을 것으로 추정되나 희생일과 희생장소 등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하였다.¹¹⁵⁾

참고인 이○○(고창경찰서 사찰계 근무)은 “고창은 비교적 좌익들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다. 고창지역 보도연맹원들은 고창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후퇴하던 고창경찰서 경찰에 의해 고수면 소재지 영광 방향 도로가의 야산에서 사살되었다. 고창경찰서 후퇴일은 7월 20일이었고 희생자의 수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골수’만 죽었을 것이다”고 하였다.¹¹⁶⁾

참고인 한○○(전 고창군 빨치산활동)은 “전쟁 발발 후에 고창읍과 각 면에서 잡아들인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들이 고창경찰서 유치장 수감실 4곳에 가득 수감되어 있었다. 이 중 많은 사람이 풀려났고¹¹⁷⁾ A급들만 후퇴과정에서 죽었다. 희생장소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해방 후에 좌익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었던 김봉두의 경우 정읍시 소성면 인근에서 희생되었고, 나머지는 고수면 소재지에 있는 다리 밑에서 총살되었다”고 하였다.¹¹⁸⁾

현지조사 도중 만난 참고인 안○○(고수면 황산리 거주)은 전쟁 발발 직후 고창경찰서가 후퇴하면서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트럭에 싣고 와서 구덩이를 파고 죽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사건장소는 고수면 부곡리에 위치하고 있고 고창에서 영광으로 가는

114) 신청인 성종철 통화보고서(2008.10.21).

115)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10.15).

116)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08.10.16).

117) 한○○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에 예비검속되었다가 풀려난 사람 중에 기억하는 사람들은 고창읍 출신의 김○○, 김○○, 김○○, 오○○, 안○○ 등이다. 이들은 모두 나와 친분이 있어서 알게 되었다. 고창경찰서에 예비검속되었다가 풀려난 이들이 모두 보도연맹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보도연맹원도 있을 것이고 예비검속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참고인 한○○ 면담보고서, 2008.10.23).

118) 참고인 한○○ 면담보고서(2008.10.23).

구 도로의 야산 고랑이라고 하였다.¹¹⁹⁾

이와 관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참고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고창지역 보도연맹원 희생장소는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야산 고랑(지수재고랑)임을 확인하였다.¹²⁰⁾

즉, 전쟁 발발 후 고창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고창경찰서가 후퇴하였던 7월 20일경¹²¹⁾ 고수면 부곡리 지수재고랑에서 살해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한편 고창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전원이 지수재고랑에서 희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인 한○○(전 고창군 빨치산활동)이 김○○의 경우 정읍시 소성면 인근에서 사망했다고 하여 관련유족을 탐문하였으나 면담을 거부하여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리(익산)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인 정영관(다-1283호, 다-2646호)

[사진 7] 지수재고랑



이 아버지 정진호의 사망장소를 정읍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에 ‘정읍 소성면 보하리 보도연맹 학살’¹²²⁾이라는 기록을 확인한 후 2006년에 정읍시 소성면의 현장을 찾아가 인근 주민을 탐문한 결과 동 장소에서 고창과 정읍 지역 보도연맹원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¹²³⁾ 따라서 고창지역 보도연맹원 중 일부가 소성면 보화리 인근(구 슬재)에서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119) 참고인 안○○ 면담보고서(2008.10.28).

120) 진실화해위원회는 먼저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림면 가평리 가평부락을 탐문하였으나 동 장소에서 인민군 점령기에 민간인들이 희생된 적은 있으나 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들이 사망한 사건은 없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어 여기는 이 사건의 사살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자신이 아버지의 사망장소를 방장산 인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은 친척들에게 들어서이며 이와 관련하여 진술할 만한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희생장소를 신림면 가평리 가평부락 인근으로 추정한 것은 가평부락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가평부락에서 한국전쟁 당시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서였으며 고수면도 넓게 보면 방장산 인근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신청인 성종철 통화보고서, 2008.10.21).

121) 참고인 김○○은 전쟁당시 본인이 기록했던 노트를 보여주며 1950년 7월 20일 오전 10시 고창경찰서장이○○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참고인 김○○ 면담보고서, 2008.10.15), 참고인 이○○도 7월 20일 날 1차로 후퇴하였다고 하였다(참고인 이○○ 면담보고서, 2008.10.16).

12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한울아카데미, 2005년, 68~69쪽.

123) 신청인 정영관 통화보고서(2008.7.1).

이곳은 관련 문서 자료나 다른 참고인의 진술이 없으므로 고창지역 사건의 희생장소로 특정할 수는 없다.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지수재고랑에서 몇 명이 살해되었는지는 추정할 수 있는 진술로는 참고인 한○○(전 고창군 빨치산)의 진술이 있다. 그는 “당시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의 수는 많았으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풀려나와 고수면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15~16명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당시 고창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하였던 이○○은 희생자의 수는 모르지만 ‘골수’만 죽었다고 하고, 신청인 성종철은 자신의 가족이 진실규명대상자의 시신을 수습할 당시 현장에 시신이 아주 많아서 뒤적거리며 찾았다고 하므로,¹²⁴⁾ 지수재고랑에서 사살된 희생자의 수를 확정할 수 없다.

진실규명대상자 성윤기(다-9648호)의 경우 참고인 이병권(마을 주민, 당시 21세)이 성윤기가 좌익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되어 장소불상의 곳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²⁵⁾ 따라서 진실규명대상자 성윤기의 경우 참고인 진술이 존재하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대상자의 사망일이 ‘단기 4283년(서기 1950년) 5월 21일’로서 이는 실제 연행된 날의 음력일자와 일치하므로 본 사건 희생자로 판단된다.

즉, 진실화해위원회는 지수재고랑에서 살해당한 희생자 개개인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희생자 중 전북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270번지에 거주하였던 성윤기(成潤基, 당시 23세)의 신원은 확인하였다.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당시 고창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했던 참고인 이○○은 “고창지역 보도연맹원들의 예비검속과 살해는 고창경찰서 사찰계 주도로 진행되었다. 당시 사찰주임은 경기도 파주 출신의 임○○였고 사찰계 소속 경찰은 15명가량 되었다. 보도연맹원 살해는 전북도경에서 경비전화를 통해 각 경찰서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희생대상은 간부급에서 결정하였고 사찰계 소속 경찰들과 경비계 소속 경찰들이 동원되어 사살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²⁶⁾

참고인 한○○(전 고창군 빨치산)은 가해자를 우익단체회원이며 배속장교였던 ‘박○○’

124) 신청인 성종철 통화보고서(2008.10.21).

125) 참고인 이병권 통화보고서(2008.11.10).

126)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08.10.16).

제 3 권

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참고인 안○○(사건현장 인근 거주자)은 고수면 와촌리 사동부락 출신 '박○○'이 배속장교로서 고창경찰서가 후퇴할 때 함께 후퇴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가 실제로 가해행위에 가담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으므로¹²⁷⁾ 박○○이 가해에 참여했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고창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의 살해에는 전북도경의 지시에 따라 고창경찰서 사찰계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가해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수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요약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자료조사 결과, 전쟁 발발 후 진행된 고창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고창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0일 고창경찰서 후퇴시에 전북도경의 지시를 받은 고창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고수면 부곡리 지수재고랑에서 집단살해되었으며 이 중 무장면 송계리 주민 성윤기(成潤基, 당시 23세)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금산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금산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 건은 2건이다. 신청인 이상준(다-2020호)은 형 이준규가 보도연맹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민간항공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미가제 특공대원으로 배치되었다가 체포되어 소련에서 3년간 포로생활을 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에 동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산경찰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약 1주일간 금산경찰서에 구금되었고, 1950년 7월 중순경 금산경찰서 경찰이 후퇴하면서 남일면 음대리 냇가에서 살해되었다고 하였다. 신청인 정동조(다-9426호)는 보도연맹원이었던 부 정해선이 음력 5월경 금산경찰서의 소집통보를 받고 나간 후 7월 10일(음력 5월 25일)경 금산군 부리면 개경자고개에서 살해되었다고 하였다.

127) 참고인 한○○ 면담보고서(2008.10.23) ; 참고인 안○○ 면담보고서(2008.10.28).

나) 자료 및 참고인 조사

금산사건은 신경득의 『조선 중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에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7월 20일경 경찰들이 ‘옥박골’에서 예비검속자들을 향해 기관총소사 후 불을 질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진실규명대상자 이준규의 제적등본에도 ‘단기 4283년(1950년) 7월 20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또한 희생일을 추정할 수 자료이다.

참고인 양○○(수복 후 금산경찰서 전투대 근무)은 전쟁이 발발하자 각 지서 소속 경찰들이 보도연맹원들을 연행하여 금산경찰서에 구금했고, 금산경찰서 경찰 등이 밤을 이용하여 현 충남 금산군과 무주군의 경계인 개경자고개 인근 골짜기에서 사살한 후 바로 후퇴하였다고 했다.¹²⁸⁾

참고인 김○○(금산경찰서 경비계 근무)은 이 사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금산군에는 이현상을 비롯하여 좌익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았다. 금산군 보도연맹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모두 확실한 빨갱이들이고 대부분 인텔리남자들이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각 지서 직원들이 보도연맹원을 검속하여 금산경찰서(현 진악지구대 건물) 유치장에 가두었는데 유치장이 좁으니까 일반인들은 풀어주었고, 나중에는 연초창고에 나누어 가두었다. 구금된 사람들의 수는 모르겠으나 몇 백 명까지는 되지 않았고 검속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다. 당시 금산경찰서가 영동과 진안 방면으로 나누어 후퇴하였는데, 보도연맹원들을 데리고 후퇴할 수 없기 때문에 영동으로 피난가는 경찰들은 무주군 가는 옥박골에서 죽이고 진안으로 후퇴한 경찰들은 남일면 음대리에서 죽였다. 옥박골에서는 7~8명 죽고, 남일면 음대리에서는 40~50명가량 죽었을 것이다. 경찰은 해질녘에 보도연맹원 스스로 구덩이를 파게 한 뒤 사살했으며, 당시 금산경찰서가 소유하고 있던 총기류는 카빈과 99식 소총이었다”고 하였다.¹²⁹⁾

다) 현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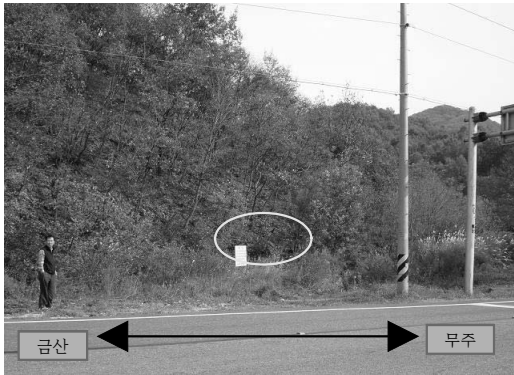
현지조사 결과 ‘개경자고개’는 금산군 부리면과 무주군 부남면의 경계를 지칭하는 지명이고, 이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지점은 개경자고개에서 약 1km 들어가는 깊은 야산 골짜기로서 통상적으로는 ‘옥박골’로 불린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옥박골 인근 주민 김○○(올해 55세)는 전쟁 발발 후 금산경찰서 순경들이 약 500~600명의 사람들을 이곳에서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자신이 어릴 때 옥박골에서 놀다 보면 신발이나 사람 뼈 등을

128) 참고인 양○○ 면담보고서(2008.10.29).

129)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10.29).

흔하게 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즉, 금산지역 보도연맹원의 집단살해장소는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옥박골'로 확인되었다.

[사진 8] 옥박골 입구



[사진 9] 옥박골 살해장소



현지조사 결과 '남일면 음대리 냇가'는 현재 폐교된 금일초등학교 인근으로 확인되었다.¹³⁰⁾ 남일면 음대리 냇가는 참고인 김성식(이준규의 시신수습자)이 이준규의 시신을 직접 수습한 장소라고 하고, 당시 금산경찰서 근무자였던 김○○이 보도연맹원 살해장소로 지정한 곳이므로 전쟁 발발 후 이곳에서 금산 보도연맹원들이 집단살해된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사진 10] 남일면 음대리 냇가



[사진 11] 13번 국도에서 본 희생장소



130) 현재는 냇가가 메워져 인삼밭으로 개간된 상태였다.

요컨대 전쟁 발발 후 금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7월 20일경 후퇴하던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옥박골과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금일국민학교 인근 냇가에서 집단적으로 사살되었다.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옥박골의 경우 북한 측 자료는 희생자를 약 1,500명이라고 하고, 현장 인근 주민 김창수는 약 500~600명가량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참고인 양○○(금산경찰서 전투대 근무)은 개경자고개(옥박골)에서 100명까지는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였고, 참고인 김○○(금산경찰서 경비계 근무)은 10명 이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료와 각각의 진술에서 제시된 희생자의 수가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옥박골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남일면 음대리 냇가의 경우 시신수습자인 김성식이 목격한 시신이 3구였다고 하나 당시 금산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김○○은 약 40~50명이 살해되었다고 하였다. 이외에 추가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이 장소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를 확정할 수 없다.

한편, 진실규명대상자 이준규(다-2020호)는 시신수습자인 김성식이 희생사실을 확인해주었고,¹³¹⁾ 제적등본에도 단기 4283년(1950년) 7월 20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준규의 희생사실은 확인되었다. 진실규명대상자 정해선(다-9426호)의 경우 당시 연행 상황과 시신을 목격한 처 양승예가 신청인 진술시 동행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¹³²⁾

즉, 희생자 개개인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으나, 희생자 중 전북(현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00번지에 거주하였던 이준규(李準奎, 당시 25세), 전북(현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344번지에 거주하였던 정해선(鄭海善, 당시 25세) 등 2명의 신원은 확인되었다.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참고인 양○○(수복 후 금산경찰서 전투대 근무)은 “이 지역 보도연맹원들이 각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금산경찰서에 넘겨졌고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¹³³⁾

131) 김성식은 본인이 이준규 동생의 트럭 운전자로서 이준규를 잘 알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시신수습에도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이준규는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전쟁 발발 직후에 남일면 음대리 냇가에서 사망했다고 하였다.(참고인 김성식 진술조서, 2008.4.23)

132) 신청인 정동조 진술조서(2008.8.30).

133) 참고인 양○○ 면담보고서(2008.10.29).

제 3 권

참고인 김○○(금산경찰서 경비계 근무)은 “전쟁이 발발하자 각 지서 경찰들이 보도연맹원들을 연행하여 금산경찰서로 넘겼다. 이후 금산경찰서장이 전북도경찰국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CIC 대원과 상의하여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 당시 금산경찰서가 후퇴할 무렵 소속불상의 CIC 대원 한 명이 경찰서에 들어와 있었으며, 나는 사살현장에 가지 않았으나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소속된 계(부서)를 가리지 않고 살해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하였다.¹³⁴⁾

참고인 김○○과 양○○의 진술을 근거로, 금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전북도경의 지시를 받은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사살되었고 CIC 파견대원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요약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자료조사 결과, 한국전쟁 발발 후 금산경찰서[서장 김○○(1949.10.14~1950.9.27), 경감]는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연행하여 금산경찰서 유치장과 인근 창고에 분리하여 구금하였다. 7월 20일경 전북도경찰국과 CIC의 지시를 받은 금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을 트럭에 태워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옥박골과 남일면 음대리 금일초등학교 인근 냇가에서 집단사살하였으며 희생자의 수는 알 수 없지만 이준규(李準奎, 당시 25세), 정해선(鄭海善, 당시 25세)의 신원은 확인되었다.

바. 김제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김제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 건은 4건이다.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김제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19일경 새벽 부안군 변산에서 집단사살되었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김대영(다-486호)은 부 김진열이 김제경찰서에 구금된 후 조모가 매일 면회를 다녔으며 1950년 7월 18일경 김진열을 포함하여 눈을 가린 사람들이 트럭에 실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그의 조모가 주위 사람들로 부터 트럭에 실린 사람들이 부

¹³⁴⁾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10.29).

안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희생장소를 수소문하여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하였다.¹³⁵⁾ 신청인 이순태(다-8407호)는 형 이석환이 1950년 6월 26일 백산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김제경찰서에 구금된 후 사망하였고, 그 후 인민군 점령기에 부안군 변산계곡에 김제군 보도연맹원 시신 100여 구가 방치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형의 시신을 수습하였으며 사망일은 사망현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들어서 7월 19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¹³⁶⁾

신청인 곽창원(다-10139호)을 대신하여 진술한 곽인수(진실규명대상자의 누나)는 남동생 곽삼주가 우익단체 청년들에게 연행된 후 김제경찰서에 1주일간 구금된 뒤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부안 변산으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는데 곽삼주는 가슴에 총을 맞았고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죽어 있었다고 하였다.¹³⁷⁾

신청인 최서균(다-10274호)은 부 최남석이 김제경찰서 사찰계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김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행방을 모르다가 인민군 점령기에 치안대원으로부터 사망일(음력 6월 5일, 양력 7월 19일)과 희생장소를 통보받고 신청인이 친척들과 함께 가서 직접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하였다. 당시 최서균은 치안대원이 희생장소라고 이야기해준 산에 가서 하루 동안 시신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인근 부락에서 잠을 잤는데, 주민이 그 산은 부안 보도연맹원들이 죽은 산이고 김제 사람들은 옆산에서 죽었다고 말해주어 다음날 그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수습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신청인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손을 뒤로 묶이고 꿇어앉힌 상태에서 사살당한 시신 100여 구가 흙으로 대충 덮여 있었으나 신청인이 갔을 때는 그동안 내린 비로 인해 일부 시신의 얼굴들이 흙 위로 나와 있었다고 하였다.¹³⁸⁾

나) 참고인 조사

참고인 홍○○(김제경찰서 트럭 운전수)는 당시 김제경찰서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부안 변산의 야산에서 집단적으로 사살되었다고 하였다. “사살할 때는 통상적으로 사살될 보도연맹원들과 간부 1~2명, 지원하는(총을 쏘는) 사람 5~6명 가량이 갔다. 부안 변산에 도착하면 주임 등 간부들은 산 밑에서 지시하고, 사살에 참여할 경찰관은 보도연맹원들을 앞세우고 뒤에서 따라가는데 산 밑에서 살해장소로 올라가는 샛길이 따로 있었다. 미리 구덩이도 파놓았다. 총살에 동원된 사람들은 새로 임용된 젊은

135) 신청인 김대영 진술조서(2008.7.10).

136) 신청인 이순태 진술조서(2008.7.9).

137) 참고인 곽인수 통화보고서(2008.8.6).

138) 신청인 최서균 진술조서(2008.7.8).

제 3 권

순경들로서 99식 소총 등 큰 총을 이용하여 살해하였다. 한 번 갈 때마다 트럭이 5~6대가 갔다”고 하였다.¹³⁹⁾

참고인 양○○(김제경찰서 경무계 통신반 근무)은 “보도연맹원 사살에 관여한 주무부서는 김제경찰서 사찰계이다. 나는 무선통신원이었고 이 일 자체가 대외극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다만 보도연맹원들은 김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김제경찰서는 7월 19일 후퇴하였는데 보도연맹원들은 후퇴하기 며칠 전에 사살되었다. 전쟁발발 후 보도연맹원 등 불순분자 처리 등에 관한 문서는 암호화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비밀문서가 오면 암호전문 통신원에게 전달했다”고 하였다.¹⁴⁰⁾

부안지역 사건 참고인 최○○(수복 후 부안경찰서 사찰계 근무)도 부안군 상서면 개암동 골짜기가 접산으로서 사람 죽이기에 용이하여 부안지역 보도연맹원뿐 아니라 김제지역 보도연맹원들도 여기서 죽었다고 진술하였다.¹⁴¹⁾

참고인 김○○(김제경찰서 광활지서 근무)는 인민군 점령기에 금구면 인민위원회 서기장 ‘온○○’로부터 보도연맹원이었던 형이 부안 변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서 김제 보도연맹원 희생사건을 알게 되었고 김제는 야산이 없기 때문에 희생자들은 부안 변산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⁴²⁾

트럭 운전수였던 참고인 홍○○의 진술에 따르면 김제 보도연맹원의 희생은 최소 2차례 이상 실시되었고, 참고인들이 진술하는 희생장소는 부안 변산반도로 통칭되지만 구체적으로는 개암동 골짜기로 판단되었다.

다) 현지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지조사를 하여 김제 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된 곳은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사 인근 야산으로 속칭 개암동 골짜기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암동 골짜기는 수많은 야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체적인 희생지점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결과, 전쟁 발발 후 김제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1950년 7월 중순경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동 골짜기에서 집단적으로 사살되었다. 특히 시신수습에 참여했던 참고인들은 시신들이 손이 묶인

139) 참고인 홍○○ 면담보고서(2008.10.16). 홍○○는 본인이 고참 운전수에 속하였기 때문에 후배 운전수에게 현장까지 가는 길 안내만 하고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총살집행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140) 참고인 양○○ 면담보고서(2008.10.15).

141) 참고인 최○○ 면담보고서(2008.10.15).

142)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10.15).

채 구덩이에 앉은 상태로 사살되었다고 하였고 이런 사실은 개암동 골짜기에서 죽은 부안 보도연맹원들의 희생경위와도 대동소이하게 일치하였다.

[사진 12] 개암동 골짜기 전경



[사진 13] 개암동 골짜기 후경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개암동 골짜기에서 사살당한 희생자의 수를 추정할 수 있는 진술로는 김제경찰서 유치장에 사람이 꽉 차면 100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참고인 홍○○(김제경찰서 트럭운전수)의 진술, 부안 변산계곡에 김제 보도연맹원 100구의 시신이 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신청인 이순태(다-8407호)의 진술, 약 100구의 시신을 목격하였다는 신청인 최서균(다-10274호)의 진술, 100구까지는 안 되지만 시신이 상당히 많았다는 참고인 곽인수(진실규명대상자 곽삼주의 시신수습자)의 진술이 있다.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볼 때 개암동 골짜기에서 사살당한 김제 보도연맹원의 수는 약 100명으로 추정된다.

희생자 개개인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진실규명대상자 김진열(다-486호)의 경우 참고인 김진홍(사촌동생, 당시 11세)이,¹⁴³⁾ 이석환(다-8407호)은 참고인 이남기(5촌 친척, 당시 23세)가,¹⁴⁴⁾ 곽삼주(다-10139호)는 참고인 곽인수(시신수습자, 당시 25세)가,¹⁴⁵⁾ 최남석(다-10274호)은 참고인 김종철(마을주민, 당시 21세)이¹⁴⁶⁾ 참고인 진술을

143) 참고인 김진홍은 진실규명대상자인 김진열의 사촌동생으로서 김진열이 전쟁 발발과 동시에 김제경찰서에 연행되어 부안군 상서면 개암동골짜기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김진홍 통화보고서, 2008.11.10).

144) 참고인 이남기(당시 23세)는 당숙이었던 진실규명대상자 이석환이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전쟁 발발과 동시에 끌려가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이남기 통화보고서, 2008.11.14).

제 3 권

통해 희생사실을 확인해주어 이 4명의 신원은 확인되었다.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참고인 홍○○(김제경찰서 트럭 운전자)는 “도경찰국에서 ‘장부’를 보고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알려주었으며,¹⁴⁷⁾ 김제경찰서 경비과는 미리 구덩이를 파서 경비주임 등 간부들은 밑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순경 5명이 올라가서 총을 쏘았다”고 하였다.¹⁴⁸⁾

참고인 김○○(김제경찰서 광활지서 근무)는 “김제경찰서 사찰계(사찰주임 김○○)가 보도연맹원을 사살한 주무부서였다. 당시 사찰주임은 김○○이었고 주로 일제강점기 경찰들이 취조사무를 담당하였다. 김제는 평야지대라 좌익사건 등이 많지 않아 사찰계 근무자가 7~8명으로 다른 경찰서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보도연맹원 희생 시에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¹⁴⁹⁾

참고인 양○○(김제경찰서 경무계 통신반 근무)은 “보도연맹원 사살에 관여한 주무부서는 김제경찰서 사찰계이다. 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 등 불순분자 처리 등에 관한 문서는 암호화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비밀문서가 오면 암호전문 통신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¹⁵⁰⁾

당시 김제경찰서에 근무했던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전북도경의 지시를 받은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직접 사살한 가해자로 확인된다.

4) 요약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자료조사 결과, 전쟁 발발 후 김제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100여 명은 김제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중순경 전북지방경찰국

145) 참고인 곽인수는 곽삼주의 누나로서 남동생이 김제경찰서에 끌려간 후 면회를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고 부안 변산에서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인민군 점령기에 본인이 수습하러 갔을 때는 시체 썩은 냄새가 심했고 구덩이를 줄줄이 파놓았는데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참고인 곽인수 통화보고서, 2008.8.6).

146) 참고인 김종철은 최남석의 동네 주민으로서 최남석이 좌익활동 후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부안 변산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김종철 통화보고서, 2008.11.13).

147) 홍○○는 전북지방경찰국에서 희생자를 지정하여 경찰서에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전○○(전북도경 사찰과 근무)는 내무부 치안국으로부터 사살 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각 경찰서에 하달하였으나 구체적인 희생자와 희생장소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살과정에 각 경찰서의 재량이 많이 발휘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참고인 전○○ 면담보고서, 2008.11.18).

148) 참고인 홍○○ 면담보고서(2008.10.16).

149)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10.15).

150) 참고인 양○○ 면담보고서(2008.10.15).

의 지시를 받은 김제경찰서[서장 하○○(1950.5.13~1950.10.1), 경감] 소속 경찰들에 의해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동 골짜기에서 집단사살되었으며 희생자 중 김진열(金鎭烈, 당시 31세), 이석환(李錫煥, 당시 28세), 곽삼주(郭參柱, 당시 21세), 최남석(崔南錫, 당시 38세) 등 4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사. 남원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남원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 건은 2건이다. 신청인 곽성문(다-7676호)은 형 곽봉철이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10일경 연행되어 남원경찰서에 1주일가량 구금되었다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였고, 신청인 한점녀(다-10144호)는 부 한백장이 일반 폭력사건으로 남원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7월 19일경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과 함께 남원시 도통동 인근 동지고개에서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되었다고 하였다.

나) 참고인 조사

사건발생 당시 도통동에 거주하였던 참고인 송○○(현장 목격자, 당시 18세)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살현장을 목격하였으며 사건현장은 남원군(현 남원시) 고죽동 야산으로서 현재는 KT&G 연초제조창 건물 자리라고 하였다. 참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 “어느 날 오전, 트럭 1대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손이 묶인 채 타고 있었다. 헌병대가 길가에 트럭을 세우고 사람들을 내려 현장으로 올라가게 하자 피살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울거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기도 하였다. 사건현장에는 이미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헌병들이 줄줄이 서서 총격을 가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구덩이에 빠졌으며 이후 헌병들이 확인사살을 하였다. 트럭 1대에 실린 사람들의 총살이 끝나면 다시 남원경찰서에 가서 사람들을 신고 와 총살을 진행하였다. 하루 동안 트럭이 총 6번 왔다 갔다 하였고 사건이 마무리된 시간이 오후 2시경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남원경찰서 경찰들이 유치장 문을 잠그고 후퇴하자 헌병대가 와서 구금되었던 사상범들을 총살시킨 것이며 피살자 중 일부는 세금을 내지 않아서 구금되었던 일반인이었다. 이 사건 3일 후에 인민군이 남원에 진입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¹⁵¹⁾

제 3 권

당시 고죽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참고인 유○○(현장 목격자, 당시 10세)도 총소리가 나자 호기심에 총살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 유○○은 송○○와 대동소이하게 진술하였는데 “사건현장의 정확한 행정구역은 남원군(현 남원시) 고죽동 황죽마을 야산으로서 속칭 ‘도둑골’로 불리며 현재는 KT&G 연초제조창 건물 자리이다. 도둑골에서 개간 당시에 뼈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내가 목격하기로는 가해자인 군인들은 미리 얹은 구덩이를 여러 개 파놓았고 GMC트럭에 사람들을 싣고 와서 총살을 시켰는데 사람들은 줄줄이 묶여 있었고 트럭 1대에는 20여 명이 타고 있었다. 트럭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죽었으리라고 본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당시 남원경찰서가 후퇴하기 전에 유치장에 수감되었던 사람들로 사상범뿐 아니라 일반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¹⁵²⁾

이외에도 당시 남원경찰서 경무계에 근무했던 참고인 강○○은 “전쟁이 발발하자 보도연맹원들을 일시 구금했다가 ‘뒤처리’를 하였는데 몇 명을 어디서 죽였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전쟁 시기에 송동면 신작로 인근 으스스한 곳에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보도연맹 사건 장소인지는 모르겠다. 보도연맹원들은 남원경찰서 사찰계가 관할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사살은 사찰계와 헌병대가 주도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¹⁵³⁾

당시 남원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했던 참고인 백○○은 “남원군 보도연맹원들의 수는 모르지만 남원에는 좌익활동가들이 많았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시켰다. 그런데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인민군과 교전하기 위해 전주로 출동을 한 후에 헌병대가 유치장의 열쇠를 부수고 예비검속했던 사람들을 왕정동의 ‘쑥골’에서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당시 유치장에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이송되기 위해 유치중인 일반 형사사범도 있었는데 이들도 가리지 않고 사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¹⁵⁴⁾

다) 현지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지조사를 하여 도둑골을 희생장소로 확정하였다. 당시 도둑골은 도로와 근접하여 트럭을 타고 이동하기 쉬우면서도 다소 험한 지형에 속했기 때문에 희

151) 참고인 송○○ 면담보고서(2008.9.4).

152) 참고인 유○○ 통화보고서(2008.9.23).

153) 참고인 강○○ 면담보고서(2008.10.16).

154) 참고인 백○○ 면담보고서(2008.10.16).

생장소로 선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참전경찰 참고인인 강○○과 백○○이 진술한 송동면 신작로 인근과 왕정동 쑥골에 대한 현지조사도 하였으나¹⁵⁵⁾ 이곳을 희생장소로 특정할 만한 추가 진술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희생장소로 특정하지 않았다.

[사진 14] 도둑골(전경)



[사진 15] 도둑골(후면)



즉, 전쟁 발발 후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그리고 일반사건 구금자들은 7월 19일경 오전 트럭에 실려 남원군(현 남원시) 고죽동 야산 속칭 도둑골(현 KT&G 연초제조창 건물)에서 여러 차례에 나뉘어 집단사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도둑골 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사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도둑골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 송○○(현장목격자, 당시 18세)는 트럭 한 대에 약 30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가해자들은 6차례 보도연맹원을 수송한 후 총살을 했다고 하였다. 이 진술에 따르면 도둑골에서 약 180명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참고인 유○○(현장목격자, 당시 10세)은 트럭 한 대에 20여 명이 타고 있었고 트럭이 여러 번 왔다 갔

155) 진실화해위원회는 참전경찰 참고인 2명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송동면 신작로 인근 으스한 곳과 왕정동 쑥골에서 보도연맹원 사살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송동면 신작로 인근은 장소가 넓어서 특정기가 어려워 사건관련 참고인을 탐문하지 못하였고 남원시 왕정동 쑥골부락 사건에 대해서는 거주자 황○○(당시 18세)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황○○은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군에 의해 오형사라고 불리던 경찰이 쑥골부락 인근 복암산의 '실동골짜기'에서 사망한 사건은 있었으나 전쟁 발발 즈음 남원경찰서가 후퇴하면서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남원시 왕정동 쑥골부락에서 집단살해한 사건은 없었다고 하였다(참고인 황○○ 면담보고서, 2008.10.31). 따라서 참고인 백○○(남원경찰서 사찰계 근무)이 보도연맹원 희생장소라고 진술한 '왕정동 쑥골'을 보도연맹원 살해장소로 확정하지 못하였다.

제 3 권

다 했으므로 최소한 100명 이상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도둑골 희생자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진실규명대상자 곽봉철(다-7676호)의 경우 참고인 임명근(후배, 당시 26세)과¹⁵⁶⁾ 참고인 곽근춘(조카, 당시 18세)이,¹⁵⁷⁾ 한백장(다-10144호)의 경우는 참고인 한순모(마을 주민·친척, 당시 23세)가 사망사실을 확인해주었다.¹⁵⁸⁾

즉 희생자 개개인의 신원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경남 함양군 마천면 덕전리 822번지가 본적이었고 사건 당시 남원군 운봉면 덕산리에 거주하였던 곽봉철(郭鳳喆, 당시 31세)과 남원군 사매면 화정리 233번지에 거주하였던 한백장(韓白長, 당시 49세)의 신원은 확인되었다. 한편 한백장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결과 보도연맹 혹은 예비검속 사건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로서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과 함께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한백장의 희생경위가 보도연맹원 희생경위와 유사하므로 본 사건 희생자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참고인들은 남원지역 희생사건의 가해주체를 소속불상의 헌병대라고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참고인 송○○(현장 목격자, 당시 18세)는 당시 총을 쏘았던 가해자는 소속불상의 헌병대 1개 소대였고, 참고인 유○○(현장 목격자, 당시 10세)도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었다고 하였다.¹⁵⁹⁾

참고인 강○○(남원경찰서 경무계 근무)은 “보도연맹 사건 관련은 사찰계가 주무계였고 사찰계와 헌병대 주도로 보도연맹원이 처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남원에는

156) 참고인 임명근은 곽봉철의 후배로서, 곽봉철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지식층이어서 경찰은 곽봉철이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함양 사람인 곽봉철은 당시 남원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원경찰서 경찰에게 끌려간 이후 행방불명되었고 죽었을 것이다. 시신수습은 못하였다. 그리고 마천면사무소가 불타서 호적이 전부 없어져서 곽봉철은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임명근 통화보고서, 2008.11.11).

157) 참고인 곽근춘은 숙부인 곽봉철이 특별히 좌익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마천면 남로당원이었던 사람들이 자꾸 좌익활동을 하자고 꼬드기니까 그걸 피해서 남원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남로당원이 경찰에 잡혀서 고문을 하자 마지못해 숙부 이름을 거론하여 남원경찰서에 잡혀가서 사망하였다. 조부님과 참고인의 부친이 숙부를 석방시키기 위해 돈을 가지고 갔으나 이미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렸다는 말을 들었다. 시신수습도 못하였고 마천면사무소가 불이 나서 재호적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참고인 곽근춘 통화보고서, 2008.11.11)

158) 참고인 한순모는 한백장이 좌익활동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취중에 발생한 싸움으로 경찰서에 수감 중이었는데 전쟁이 나자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참고인 한순모 통화보고서, 2008.11.10).

159) 참고인 송○○ 면담보고서(2008.9.4) ; 참고인 유○○ 통화보고서(2008.9.23).

헌병대 파견대가 1개 분대가 있었고 일등상사가 책임자로 있었던 것은 기억한다”고 하였다.¹⁶⁰⁾

참고인 백○○(남원경찰서 사찰계 근무)은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남하하는 인민군과 교전하기 위해 전투에 나간 사이 헌병대가 보도연맹원들을 처리하였다. 헌병대 사무실은 금동에 있었고 헌병대장의 계급은 일등상사였으며 헌병대원은 5명가량 있었을 것이다. 남원에는 여순사건 이후로 공비토벌을 위해 3연대(3연대장 함○○) 헌병대 파견대가 2~3명이 있었으나 사건에 관여한 헌병대의 소속 등은 모르겠다. 또 당시 특무대(CIC)가 구 사방관리소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CIC대장이 소령인 것은 기억하나 보도연맹원 처리에 CIC가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¹⁶¹⁾

요컨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도둑굴 사건의 가해주체는 당시 남원에 주둔하였던 육군 소속의 헌병대 파견대(헌병대 파견대장 일등상사) 대원들로 추정되고 남원군에 주둔하였던 CIC 대원들 및 남원경찰서 소속 경찰들의 참여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당시 남원지역에 주둔한 국군의 소속은 알 수 없으나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전쟁 발발 직후 해체된 제7사단이 7월 10일 전주에서 학도병 500명을 보충받아 제3·9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이 재편되었고 7월 14일 민부대로 개칭되었으며, 7월 16일부터 용안, 전주, 임실, 남원, 운봉방면으로 철수하였다고 하므로¹⁶²⁾ 전쟁 발발 당시 남원지역에 주둔하였거나, 남원지역을 경유해 후퇴 중인 국군 제7사단 소속 헌병대일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가해 경위에 직접 관련한 헌병대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현장목격자 및 참전경찰 출신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할 때 당시 남원에 주둔하였거나 후퇴 중인 헌병대가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일반수들에 대한 처리권한을 부여받고 주도적으로 사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4) 요약

조사결과, 전쟁 발발 후 남원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그리고 남원경찰서에 수감 중이었던 일반 재소자 등 최소 100여 명은 남원경찰서 유치장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0일경 당시 남원에 주둔하였거나 남원을 경유하여 후퇴하는 헌병대 대원들에게

160) 참고인 강○○ 면담보고서(2008.10.16).

161) 참고인 백○○ 면담보고서(2008.10.16).

162) 한편, 전쟁 발발 당시 호남지역에 주둔한 국군은 광주에 사단사령부를 둔 제5사단(사단장 이용준 소장)이고, 제5사단은 전주에 제15연대를, 송정리에 제20연대를, 함양에 독립대대를 예하연대로 두고 있었다. 『한국전쟁간 연대급 이상 부대 예배속 변천』,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자료실 ‘한국전쟁사에서 인용, <http://www.army.mil.kr/history>.

사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희생자 개개인의 신원은 알 수 없지만 곽봉철(郭鳳喆, 당시 31세)과 한백장(韓白長, 당시 49세) 등 2명의 희생사실은 확인되었다.

아. 무주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무주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 건은 3건이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 참고인 2명이 진실규명을 요구하여 진실규명대상자 5명의 희생경위를 조사하였다. 신청인 및 참고인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무주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17일(음력 6월 3일) 새벽 무주읍 으름숯골과 밤숯골에서 집단사살되었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길준섭(다-6505호)은 부 길상교가 전쟁 발발 후에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7월 17일 연행된 사람들이 밤숯골과 으름숯골에서 집단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¹⁶³⁾ 신청인 김정임(다-6506호)은 진실규명대상자인 부 김진태가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어 신청인의 조모가 사람들이 많은 죽었다고 하는 장소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신청인의 숙부 김진춘도 형 김진태가 무주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7월 17일 으름숯골에서 약 200~300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살해되었으나 김진태의 시신은 찾지 못하였다고 하였다.¹⁶⁴⁾

신청인 한금배(다-7833호)는 부 한학문이 연행된 후 7월 17일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조모와 모친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밤숯골과 으름숯골을 찾아 헤맸지만 밤숯골에는 수류탄을 던져 시신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등 결국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¹⁶⁵⁾ 참고인 윤홍윤(미신청)은 보도연맹원이었던 형 윤홍기가 무주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7월 17일 사살당하였으며, 인민군 점령기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으름숯골과 밤숯골을 갔으나 밤숯골의 시신들은 불에 태워져서 식별하기 어려웠고, 으름숯골에서 윤홍기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였다.¹⁶⁶⁾ 참고인 이원희(미신청)는 부 이상희가 연행되어 무주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7월 17일 무주읍 싸릿재(무주장례식장 인근)에서 사살되었으

163) 신청인 길준섭 진술조서(2008.8.28).

164) 신청인 김정임 진술조서(2008.8.28) ; 참고인 김진춘 진술녹취록(2008.8.18).

165) 신청인 한금배 통화보고서(2008.11.12).

166) 참고인 윤홍윤 진술녹취록(2008.8.18) ; 참고인 윤홍윤 면담보고서(2008.10.30).

며, 약 100여 구의 시신들 속에서 이상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였다.¹⁶⁷⁾

나) 참고인 및 현지조사

참고인 박○○(무주경찰서 경리계 근무)는 “전쟁이 발발한 후 무주 보도연맹원들은 무주경찰서 유치장이 비좁아 유치장과 연무장에 나뉘어 구금되었고, 무주경찰서가 후퇴하기 전 밤 시간을 이용하여 이들을 밤숫골과 으름숫골에서 처리하였다. 희생자의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00~300명까지는 안 될 것이다”고 하였다.¹⁶⁸⁾

참고인 허○○(무주경찰서 보안계 근무)은 보도연맹사건은 사찰계 관할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겠다고 하였다.¹⁶⁹⁾

‘윤홍기’의 진실규명을 요구한 참고인 윤홍윤은 수복 후에 본인이 무주경찰서 의용경찰로 활동을 하였으며, 동료 경찰로부터 “그때(전쟁 당시) 애매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¹⁷⁰⁾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무주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희생장소가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으름숫골과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밤숫골 금구덩이 골짜기임을 확인하였다.

무주지역 보도연맹원 희생장소인 으름숫골은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야산을 일컬으며 현재 무주장례식장이 현장 주변에 있었다.

[사진 16] 으름숫골(원경)



[사진 17] 으름숫골(근경)



167) 참고인 이원희 통화보고서(2008.12.15).
 168) 참고인 박○○ 면담보고서(2008.10.30).
 169) 참고인 허○○ 면담보고서(2008.10.30).
 170) 참고인 윤홍윤 면담보고서(2008.10.30).

신청인들이 희생장소 중 하나로 일컫는 밤숫골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밤숫골은 현장 인근 마을의 옛 부락 명칭(행정명 울속)이고 사건장소는 무주읍 오산리 밤숫골 인근 금구덩이 골짜기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지조사 도중 만난 울속마을 주민 길○○(올해 67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며 길○○은 전쟁 발발 당시 무주경찰서에 구금 중이던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그 현장은 일제시대 금광자리로서 속칭 금구덩이 골짜기라고 하였다.

요컨대, 전쟁 발발 후 무주경찰서 소속 경찰은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을 1950년 7월 17일 새벽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으름숫골과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밤숫골 금구덩이골짜기에서 집단적으로 사살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밤숫골에서는 보도연맹원 사살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무주지역의 경우 사건발생 후 시신수습을 위해 현장에 갔던 참고인 진술이 다소 차이가 발생하므로 으름숫골과 밤숫골 금구덩이 골짜기에서 살해된 희생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시신수습자인 참고인 윤홍윤은 으름숫골에서 형의 시신이 현장 입구에 있었는데 주변에 약 20여 구가 넘는 시신을 보았다고 하였고, 밤숫골에서는 시신들이 불에 태워져 수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인 김진춘은 형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두 장소를 가

[사진 18] 밤숫골 금구덩이 골짜기



보았는데 시신의 수가 약 200~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참고인 전양순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으름숫골에 갔을 때 100명도 훨씬 넘는 시신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¹⁷¹⁾

희생자 개개인의 신원은 알 수 없지만 진실규명대상자 길상교(다-6505호)는 친척 길동선과 동네주민 양홍모가, 김진태(다-6506호)는 동생 김진춘과 동네 주민인 윤홍윤이, 한학문(다-7833호)은 시신목격자 전양순이,

171) 참고인 윤홍윤은 2차 진술에서 으름숫골에서 형의 시신을 수습할 당시 본인이 비교적 늦게 수습한 편에 속했고, 형의 시신이 현장 입구에 있었는데 주변에 약 20여 구가 넘는 시신을 보았다고 하였고 밤숫골에서는 시신들이 불에 태워져 수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참고인 윤홍윤 면담보고서-2008.10.30). 참고인 김진춘은 형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두 장소를 가보았는데 시신의 수가 약 200~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참고인 김진춘 진술녹취록-2008.8.18). 참고인 전양순이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으름숫골에 갔을 때 100명도 훨씬 넘는 시신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전양순 진술조서-2008.9.24).

윤홍기(미신청)는 유족이자 마을 주민인 김진춘이, 이상희(미신청)는 부인 남순석이 각각 확인해주었다.¹⁷²⁾

요컨대 무주군 밤숫골과 으름숫골에서 무주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다수 사살되었으며 이 중에서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749번지에 거주하였던 길상교(吉相敎, 당시 35세),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84번지에 거주하였던 김진태(金鎭泰, 당시 31세),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868번지에 거주하였던 한학문(韓學文, 당시 32세),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31번지에 거주하였던 윤홍기(尹弘基, 당시 25세),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65번지에 거주하였던 이상희(李相熺, 당시 28세)의 신원은 확인되었다.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참고인 박○○(무주경찰서 경리계 근무)는 “보도연맹 사건 취급은 사찰계 관할이고 보도연맹원 희생 관련 사항은 서장과 사찰주임 등 고위 간부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일반 경찰들은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¹⁷³⁾

참고인 허○○(무주경찰서 보안계 근무)은 “보도연맹 사건은 사찰계 관할이며 당시에 무주경찰서에 소속불상의 CIC 대원이 와서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¹⁷⁴⁾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전북지방경찰국과 CIC의 지시를 받은 무주경찰서가 무주군 관내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의 사살에 직접적인 가해기관으로 추정된다.

4) 요약

조사결과 전쟁 발발 후 무주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무주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17일 전북지방경찰국과 CIC의 지시를 받은 무주경찰서(서장 허○○ 경감) 소속 경찰들에 의해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으름숫골과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밤숫골 금구덩이 골짜기에서 집단사살되었으며 희생자 중 길상교(吉相敎, 당시 35세), 김진태(金鎭泰, 당시 31세), 한학문(韓學文, 당시 32세), 윤홍기(尹弘基, 당시 25세), 이상희(李相熺, 당시 28세) 등 5명의 신원은 확인되었다.

172) 참고인 길동선 진술조서(2008.8.18) ; 참고인 양홍모 진술조서(2008.8.18) ; 참고인 김진춘 진술녹취록(2008.8.18) ; 참고인 윤홍윤 진술조서(2008.8.18) ; 참고인 전양순 진술조서(2008.9.24) ; 참고인 남순석 통화보고서(2008.12.15).

173) 참고인 박○○ 면담보고서(2008.10.30).

174) 참고인 허○○ 면담보고서(2008.10.30).

자. 불안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부안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 건은 8건이다.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부안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경 상서면 개암동 골짜기, 줄포면 후촌 골짜기, 산내면(현 진서면) 여륜개 골짜기에서 사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을 사건장소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 이상기(다-7100호)는 부 이성열이 동진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부안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6일 트럭 2대에 실려 상서면 개암동 골짜기에서 사살당했으며, 신청인의 모가 사망 소식을 듣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가서 100여 구의 시신을 확인하였고 한 고랑에 다섯 명씩 묶어서 앉은 상태로 총살되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였다.¹⁷⁵⁾ 이성열의 시신수습에 참여했던 참고인 이상운(당시 19세)도 정확히 몇 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굴을 파서 사람을 넣고 죽였다고 진술하였다.¹⁷⁶⁾

신청인 지진만(다-5806호)의 부 지동규, 신청인 김철(다-6798호)의 조부 김홍술, 신청인 허철수(다-6794호)의 부 허종택, 신청인 최기원(다-6795호)의 부 최순환, 신청인 이양임(다-8794호)의 부 이길현은 각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부안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다시 줄포지서로 옮겨진 후 1950년 7월 19일경 새벽 줄포면 줄포리 후촌 골짜기에서 약 40여 명이 사살당했고 시신은 모두 수습했다고 하였다.¹⁷⁷⁾

신청인 손정훈(다-5707호)의 부 손기옥, 신청인 은희창(다-8404호)의 부 은갑동은 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부안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20일 새벽 산내면(현 진서면) 운호리 여륜개 골짜기(혹은 까치대이 골짜기)에서 사살당했고 시신은 모두 수습했다고 하였다. 특히 은갑동의 시신수습에 참여했던 신청인 은희창(다-8404호)은 도로 옆 골짜기에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손기옥의 시신수습에 참여했던 참고인 유인섭은 골짜기에 한 줄로 세워놓고 총살한 듯 시신들이 줄줄이 겹쳐 있었고 정확치는 않으나 100명 정도라고 진술하였다.¹⁷⁸⁾ 후촌 골짜기에서 사망한 허종택(다-6794호)의 부인 최진선은 “남

175) 신청인 이상기 진술조서(2008.7.10).

176) 참고인 이상운 통화보고서(2008.11.12).

177) 신청인 지진만 진술조서(2008.8.26) ; 신청인 김철 진술조서(2008.7.10) ; 신청인 허철수 진술조서(2008.7.10) ; 신청인 최기원 진술조서(2008.7.10) ; 신청인 이양임 통화보고서(2008.11.10).

178) 신청인 손정훈 진술조서(2008.7.10) ; 신청인 은희창 진술조서(2008.5.8).

편을 찾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 관할지서였던 산내지서에 갔더니 사람을 가득 태운 트럭 1대가 운호리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갔고 잠시 후 빈 트럭이 나왔으며 현장에 가 보니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 그때까지 죽지 않았던 사람이 부안에서 왔다고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남편이 없어서 그냥 왔다.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죄 없는 사람은 줄포지서에 있으니 가보라는 말을 듣고 갔으나 남편은 이미 후촌골짜기에서 손이 묶인 채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⁷⁹⁾

신청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부안지역 보도연맹원들은 3곳에서 각각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며 1차는 7월 6일경 개암동 골짜기에서, 2차는 7월 19일 경 후촌 골짜기에서, 3차는 7월 20일경 여문개 골짜기에서 순차적으로 사살되었다. 1차는 보도연맹원 ‘갑종’들이고 2차와 3차는 부안경찰서 후퇴시기에 임박하여 그때까지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들을 각각 분리하여 사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자료 및 참고인 조사

부안지역 사건이 최초로 공개된 것은 1988년 12월에 발표된 『월간 말』이며 증언을 바탕으로 ‘부안 성서면사무소 뒤에서 학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상서면 개암동 골짜기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후촌 골짜기 사건은 부안군 교육자 출신 정진석의 자성록 『웁고 그림을 떠나서』 63~69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사망 3일 후에 현장을 방문하였더니 40여 구의 주검이 부패해서 총상 자리엔 구더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아내가 죽은 남편을 못 알아볼 정도였다.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후촌 야산골짜기(일명 40고라당, 40명이 학살당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였다’고 현장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¹⁸⁰⁾

또한 인터넷신문 『부안21』 2006년 10월 29일자 기획/연재 코너에는 ‘이 땅에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보도연맹 사건으로 남동생 박상용을 잃은 박소제를 소개하면서 후촌 골짜기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부안에서는 3차에 걸쳐 학살이 일어나 약 8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¹⁸¹⁾

참고인 최○○(수복후 부안경찰서 사찰계 근무)은 부안 보도연맹원 희생사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179) 신청인 허철수 진술조서(2008.7.10).

180) 정진석, 『웁고 그림을 떠나서』 정신석자성록, 도서출판 밝, 2002.

181) 『부안21』에는 후촌 골짜기 사건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이 몇 차에 일어난 사건인지, 다른 사건이 무엇인지, 희생자를 80명으로 추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제 3 권

최○○은 “보도연맹은 전쟁 발발 전에 공산당을 보도한다고 해서 만든 단체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죽었으며 자신이 거주하였던 백산면에서도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20~30명이 넘었다. 보도연맹 가입자는 대부분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부안 보도연맹원들은 변산에 있던 개암사 인근에서 총살되었으며 김제와 정읍 보도연맹원들도 같은 장소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암사 인근이 접산이기 때문에 죽이기에 용이한 장소였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자신이 수복 후 경찰에 입문하여 1950년대 초에 부안경찰서 사찰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당시 학살에 참여했던 사찰계 선배 김○○(북한 출신)이 술을 마시면서 자랑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다. 희생 당사자에게 구덩이를 직접 파게한 후 죽였다는 것도 들었다. 개암사 외에 줄포에서도 부안 보도연맹원들이 죽었다고 들었고, 여룬개 골짜기(까치댕이 골짜기)에서도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여룬개 골짜기 사건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였다.¹⁸²⁾

다) 현지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사망현장으로 추정되는 3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암동 골짜기, 후촌 골짜기, 여룬개 골짜기가 부안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희생장소임을 확인하였다.

속칭 개암동골짜기로 불리는 사건장소는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에 소재하고 있는 개암사 입구에서 약 20여m 못 미치는 곳에서 산길을 따라 20여 분 올라가는 야산 정상이며 사살지점은 산 정상에 산길에서 약 1m 들어간 곳으로서 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으며 현재 까지도 약간 파인 흔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후촌 골짜기는 줄포면과 보안면의 경계지점이며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장 주변은 자연적으로 움푹 파인 곳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룬개 골짜기는 진서면 운호리 운호마을 입구에 있는 야산골짜기로서 현장 인근 거주자 김○○은 당시에 태어나지 않아 희생자와 가해자의 신원 등은 알 수 없으나 한국전쟁 당시에 트럭에 실려 온 사람들의 집단총살장소였다는 사실은 마을어른들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¹⁸³⁾

182) 참고인 최○○ 면담보고서(2008.10.15).

183)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9.2).

[사진 19] 개암동 골짜기 사살장소



[사진 20] 후촌 골짜기 사살장소



[사진 21] 여룬개 골짜기 사살장소



제 3 권

요컨대, 부안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전쟁 발발 후 부안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갑종’은 1950년 7월 6일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동 골짜기에서, 나머지는 같은 해 7월 19일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후촌 골짜기와, 다음날인 7월 20일 부안군 산내면(현 진서면) 운호리 여룬개 골짜기에서 집단사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개암동 골짜기 사건 희생자의 수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신청인 이상기의 진술이 유일하다. 시신수습에 참여했던 모 장인순의 목격사실을 통해 경찰이 다섯 명씩 묶어서 굴을 파서 사살하였고 희생자의 수가 100명이 넘었다고 들었으며 본인이 나중에 현장에 와서 ‘흙’이 약 23곳임을 확인하였다고 하므로 100여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⁸⁴⁾

후촌 골짜기 사건의 희생자 수는 자료와 신청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40여 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룬개 골짜기(까치댕이 골짜기) 사건 희생자 수는 진실규명대상자 손기옥의 시신수습에 참여했던 참고인 유인섭이 희생자의 수가 100명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¹⁸⁵⁾ 사살 직후에 현장을 목격한 최진선은 트럭 1대에 사람이 가득 실려 있었다고 하므로¹⁸⁶⁾ 트럭 1대에 최대한 30~40명까지 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룬개 골짜기 사건 희생자는 두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30여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부안 보도연맹원들은 개암동 골짜기에서 100여 명, 후촌 골짜기에서 40여 명, 여룬개 골짜기(까치댕이 골짜기)에서 30여 명 이상이 사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희생자 개인의 신원은 알 수 없으나 진실규명대상자 이성열(다-7100호)의 경우 참고인 이성운(시신수습자, 당시 19세)이 보도연맹가입자라는 이유로 개암동 골짜기에서 사살당하였고 자신이 직접 시신수습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¹⁸⁷⁾

후촌 골짜기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중 지동규(다-5806호)는 신청인 최기원(다-6795호)이 부안사건 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¹⁸⁸⁾ 이혁춘(다-8794호)의 사망사실은 참고인 이혁기(신청인의 숙부, 이혁춘의 동생)가,¹⁸⁹⁾ 허종택(다-6794호), 최순환(다-6795호), 김홍술(다-6793호)은 허종택의 시신수습자인 참고인 최진선이

184) 신청인 이상기 진술조서(2008.7.10).

185) 신청인 손정훈 진술조서(2008.7.10) ; 신청인 은희창 진술조서(2008.5.8).

186) 신청인 허철수 진술조서(2008.7.10).

187) 참고인 이상운 통화보고서(2008.11.12).

188) 신청인 최기원 진술조서(2008.7.10).

189) 참고인 이혁기 진술조서(2008.9.2).

이들의 희생사실을 확인해주었다.¹⁹⁰⁾

여론개 골짜기 사건 진실규명대상자 중 손기옥(다-5707호)의 희생사실은 참고인 유인섭(시신 수습자, 당시 22세)이,¹⁹¹⁾ 은갑동(다-8404호)의 희생사실은 참고인 박산동(마을 주민, 당시 15세)이¹⁹²⁾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쟁 발발 후에 부안지역에서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170여 명이 사살당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희생자 개개인의 신원을 모두 알 수 없지만,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동 골짜기 사건 희생자 중 부안군 동진면 오중리 거주자 이성열(李成烈, 당시 43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후촌 골짜기 사건 희생자 중 부안군 동진면 본덕리 299번지에 거주하였던 지동규(池東圭, 당시 26세),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235번지에 거주하였던 김홍술(金洪述, 당시 37세), 부안군 산내면 석포리 772번지에 거주하였던 허종택(許宗鐸, 당시 32세),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466번지에 거주하였던 최순환(崔順煥, 당시 39세),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525번지에 거주하였던 이혁춘(李赫春, 당시 28세) 등 6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부안군 산내면(현 진서면) 운호리 여론개 골짜기 사건 희생자 중에서는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778번지 거주자 손기옥(孫基玉, 당시 37세), 부안군 보안면 대곡리 거주자 은갑동(殷甲東, 당시 39세) 등 2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참고인 최○○(부안경찰서 참전경찰)은 보도연맹원 사살은 내무부 치안국과 전북지방경찰국에서 지시를 내려서 부안경찰서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헌병대나 CIC 등 국군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므로,¹⁹³⁾ 부안경찰서(서장 한○○ 경감) 소속 경찰들이 부안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 사살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0) 신청인 허철수 진술조서(2008.7.10).

191) 참고인 유인섭은 손정훈 조사 당시 동석하여 본인이 시신수습에 참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신청인 손정훈 진술조서, 2008.7.10).

192) 참고인 박산동은 은갑동의 마을 주민으로서 은갑동이 좌익활동을 크게 하지 않았는데 키도 크고 힘도 세서 빨치산으로 몰려 인민군이 내려오기 전에 경찰이 데리고 가서 죽었다. 어디서 죽은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시신을 찾았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박산동 통화보고서, 2008.11.14).

193)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8.10.15).

4) 요약

신청인 및 참고인 자료조사 결과, 전쟁 발발 후 부안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170여명은 부안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전북지방경찰국의 지시를 받은 부안경찰서[서장 한○○(1950.5.20~1950.10.5), 경감] 소속 경찰들에 의해 갑종은 7월 6일 개암동 골짜기에서, 나머지는 7월 19일 후촌 골짜기와, 7월 20일 여룬개 골짜기 등에서 집단 사살되었으며 이중에서 이성열(李成烈, 당시 43세)이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동 골짜기에서, 지동규(池東圭, 당시 26세), 김홍술(金洪述, 당시 37세), 허종택(許宗鐸, 당시 32세), 최순환(崔順煥, 당시 39세), 이혁춘(李赫春, 당시 28세) 등 6명이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후촌 골짜기에서, 손기옥(孫基玉, 당시 37세), 은갑동(殷甲東, 당시 39세) 등 2명이 부안군 산내면(현 진서면) 운호리 여룬개 골짜기에서 사살당했음을 확인하였다.

차. 정읍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정읍지역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 건은 8건이고 신청사건을 사건경위별로 분류하면 크게 2가지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청인 김영집(다-1019호, 신청인 사망)을 대신하여 진술한 참고인 김영길(신청인 동생)과 참고인 김영순(신청인의 누나)은 보도연맹원이었던 부 김보현이 소성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정읍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7일경 정읍군(현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와석부락 뒤 구슬재에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⁹⁴⁾

신청인 선동엽(다-8354호, 다-8357호), 신청인 김예순(다-8355호), 신청인 남궁대성(다-8356호), 신청인 황백용(다-8358호), 신청인 주경렬(다-8359호), 신청인 추화순(다-9833호)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정읍군(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군령마을 주민들로서 경찰 혹은 군인에 의해 1950년 7월 21일 오전 입암면 등천리 비로골짜기에서 사망했다고 하였다.

먼저 구슬재 사건의 경우 참고인 김영길(신청인의 동생, 당시 4세)과 참고인 김영순(신청인의 누나, 당시 20세)은 부 김보현이 보도연맹원으로서 전쟁 발발 후 소성지서로부터

194) 신청인 김영집은 진실규명 신청 후 사망하여 김영집의 동생 김영길이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소집당하였다가 정읍경찰서에 구금된 후 소식이 끊겼으며 구슬재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친이 직접 시신수습을 했다고 하였다.¹⁹⁵⁾ 부친의 시신수습에 참여했던 신청인 김영집(다-1019호, 현재 사망)은 진실규명신청서에 본인이 당시 목격한 현장을 그림과 글로 표현했는데 길이가 100m가량 되는 구덩이 2개에 시신들이 포승줄로 묶인 채 묻혀 있었다고 기재하였다. 참고인 김영순(신청인 김영집의 누나)도 당시 눈들잔등(구슬재)에는 기다란 2개의 구덩이가 있었는데 밧줄에 묶인 채 사살당한 사람의 수가 350명이었고 기관총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¹⁹⁶⁾

한편 비로골짜기 사건 신청인들은 진실규명대상자들이 모두 정읍군(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군룡마을 주민들로서 예비검속 및 희생경위도 모두 동일하다고 진술하였다. 진실규명대상자들은 전쟁 발발 후 정읍경찰서에 약 보름동안 구금되었다가 풀려나와 2~3일 동안 집에 있었는데 7월 21일 새벽에 철모를 쓴 경찰(혹은 군인)이 동네사람들을 마을 어귀에 모이라고 한 다음 피해자 10명을 분리하였고 이들을 약 2km 떨어진 원등마을 뒤 비로골짜기로 데리고 가 집단총살을 했다고 하였다. 현장에서 '안이동(현재 사망)'이 총상을 입은 채 생존하였고 다른 9명은 사망하였으며 시신들은 가족이 모두 수습하였다고 하였다.¹⁹⁷⁾ 신청인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한 진실규명대상자 외에 군룡마을 주민이었던 최인술의 동생 최복술과 김생수의 부 김복만도 함께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신청인 주경렬(다-8359호)은 생존자 안이동으로부터 들은 증언이라고 하면서 비로골짜기에 도착하자 경찰은 사람들을 산 비탈길에 세워놓은 후 철독에 서서 총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¹⁹⁸⁾

나) 자료 및 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결과 정읍 보도연맹 사건이 최초로 공개된 것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이며 제보를 기초로 '정읍 보도연맹원들이 국군·경찰에 의해 소성면 보하리에서 다수가 사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¹⁹⁹⁾ 이 기록이 구슬재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95) 참고인 김영길 진술조서(2008.8.29).

196) 참고인 김영순 통화보고서(2008.11.14).

197) 신청인 선동엽 진술조서(2008.9.1) : 참고인 유현숙 진술조서(2008.9.18) : 신청인 남궁대성 진술조서(2008.7.7) : 신청인 황백용 진술조서(2008.7.7) : 신청인 주경렬 진술조서(2008.7.7) : 신청인 추화순 진술조서(2008.9.22).

198) 신청인 주경렬 진술조서(2008.7.7).

199)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2005, 68~69쪽.

제 3 권

정읍지역 사건 참고인 송○○(정읍군 빨치산활동)는 “구슬재 사건은 6·25 당시에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공동매장했던 사건으로서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했다가 정읍경찰서가 후퇴하면서 죽인 사건이며 정확한 희생규모는 알 수 없다. 구슬재 사건이 발생할 당시 본인은 입산한 상태였고 인민군 점령기에 본인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경찰들이 구덩이를 파서 죽인 후에 흙으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시체들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²⁰⁰⁾

또한 현지조사에 동행한 참고인 김○○(와석부락주민, 당시 5세)은 “우리 집이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건을 목격하였다. 당시 구슬재에는 미리 구덩이가 파여 있었고 여러 날에 걸쳐 새벽이나 아침 무렵에 손목이 묶인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 왔다. 이들은 길가에 내려서 구슬재까지 걸어간 후 사살당했는데 희생자나 가해자의 신원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²⁰¹⁾

다) 현지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지조사를 통해 사건장소는 정읍시와 고창군의 경계지점으로서 정확한 행정구역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조동(구슬)마을 인근의 야산이며 속칭 구슬재라고 불리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정읍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전쟁 발발 후에 각 지서 경찰에 의해 소집된 후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7일경 고창군 조동면 성내리 속칭 구슬재에서 집단사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로골짜기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사망현장은 현재 정읍시 입암면에 소재하고 있는 노령역 맞은편 골짜기여서 속칭 비로골짜기로 불리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²⁰²⁾

[사진 22] 구슬재



200) 참고인 송○○ 면담보고서(2008.10.24).

201)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9.1).

202) 현재 사건현장은 그대로 있으나 경찰(혹은 국군)이 총을 쏘았다고 하는 철독과 현장 사이를 메워 국도1호선 변경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다.

신청인 및 현지조사 결과 비로골짜기 사건은 전쟁 발발 후 입암면 등천리 군령마을 주민 10명이 보도연맹원 예비검속 지침에 따라 정읍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나 자택에 있던 중 소속불상의 가해자들로부터 다시 연행되어 마을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로골짜기에서 집단사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컨대, 정읍군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전쟁 발발 후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1950년 7월 6일경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구슬재에서 집단적으로 사살되었다. 한편 정읍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던 입암면 등천리 군령마을 주민 10명은 동년 7월 21일 오전 등천리 비로골짜기에서 사살당하였고 이 중에서 주민 1명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로골짜기 사건처럼 정읍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후 다시 살해된 사건이 더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사진 23] 비로골짜기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구슬재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50명이라는 참고인 김영순의 진술 외에 구슬재에서 사망한 정읍군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의 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나 진술이 없기 때문에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참고인 송○○(전 고창군 빨치산 활동)가 본인의 학교 동창 김영순의 부 김보현이 해방 후 정읍군당위원장 경력으로 보도연맹에 가입하여 구슬재에서 사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바로 진실규명 대상자 김보현(다-1019호)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제적등본에는 김보현의 사망일이 1950년 6월 15일로 기재되어 있어서 사망시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참고인 진술과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사실을 토대로 정읍군(현 정읍시) 소성면 애당리 654

제 3 권

번지에 거주하였던 김보현(金寶鉉, 당시 40세)의 희생사실은 확인되었다.

한편 비로골짜기에서 사망한 군령마을 주민 희생자의 수는 모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이 일치하므로 9명으로 확정할 수 있으나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정읍군(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743번지에 거주하였던 선기홍(宣基洪, 당시 38세), 선학권(宣學權, 당시 31세), 등천리 776번지에 거주하였던 배동현(裴同鉉, 당시 29세), 등천리 781번지에 거주하였던 남궁일남(南宮一南, 당시 34세), 등천리 779번지에 거주하였던 황천용(黃千用, 당시 26세), 등천리 739번지에 거주하였던 주동우(侏東羽, 당시 46세), 등천리 690번지에 거주하였던 주명렬(朱明烈, 당시 24세) 등 7명이다.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정읍지역 보도연맹원 희생사건의 일반적 경위로 판단되는 구슬재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주체로 의심되는 정읍경찰서 근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타 사건관련 참고인들의 진술로 추론할 때 전쟁 발발 후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내무부 치안국과 전북지방경찰국으로부터 보도연맹원 검속 및 살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일정기간 구금시켰다가 1950년 7월 초순경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구슬재에서 다수를 살해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던 정읍군(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군룡마을 주민 10명은 7월 21일 오전 소속불상의 가해자들에게 이끌려 마을에서 약 2km 떨어진 등천리 비로골짜기에서 사살당했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가해자들이 군복과 군모를 착용했고 총으로 위협한 채 마을을 포위하여 주민들을 전부 소집했다가, 풀려난 보도연맹원만 분류하여 사살했다고 기억하였다. 따라서 가해자는 보도연맹원을 석방시켰다가 뒤늦게 사살 명령을 접한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들이거나 후퇴하는 국군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나 진술이 없으므로 비로골 사건 가해주체는 특정할 수 없다.

4) 요약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결과, 전쟁 발발 후 정읍경찰서[서장 손○○(1950.2.8~1950.10.1), 감찰관] 소속 경찰들은 내무부 치안국과 전북지방경찰국으로부터 보도연맹원 검속 및 살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일정기간 구금시켰다가 1950년 7월 초순경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구슬재에서 다수를 살해하였는데, 이 중에서 김보현(金

寶鉉, 당시 40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한편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던 정읍군(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군룡마을 주민 10명은 7월 21일 오전 소속불상의 가해자들에게 이끌려 마을에서 약 2km 떨어진 등천리 비로골짜기에서 9명이 희생되었고 이 중 선기홍(宣基洪, 당시 38세), 선학권(宣學權, 당시 31세), 배동현(裴同鉉, 당시 29세), 남궁일남(南宮一南, 당시 34세), 황천용(黃千用, 당시 26세), 주동우(侏東羽, 당시 46세), 주명렬(朱明烈, 당시 24세) 등 7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카. 임실지역

1) 예비검속과 희생경위

가) 신청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 신청사건 중 임실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 건은 없었으나 미신청 참고인 박석규가 부 박병량이 보도연맹원으로서 전쟁 발발 후 임실군 둔남면(현 오수면) 말티재에서 총살되었다고 하며 진실규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의뢰한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을 통해 임실군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로 확인된 성수면 오류리 주민 6명을 포함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7명의 희생경위를 조사하였다.

참고인 박석규는 진실규명대상자가 1950년 7월 10일경 임실경찰서 경찰에 연행된 후 임실경찰서에 약 10일간 구금되었다가 7월 20일(음력 6월 6일)경 말티재에서 다른 11명과 함께 총살당했으며 모친이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박석규는 사망 당일 부친이 석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임실경찰서에 갔으며 경찰은 없고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보도연맹원으로부터 임실경찰서가 후퇴하기 전 거물급들만 사살하고 나머지는 풀어주었는데 부친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박석규는 부친 사망 이후 교직 생활을 하였으며 초임 발령 시 신원조회 내용에 “부친이 즉결처분되었음”이라는 기록이 있었다고 하였다.²⁰³⁾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에 거주하고 있는 참고인 김학인의 부 김정덕, 숙부 김경남, 막내 숙부 김경호 등 3형제와 참고인 강호신의 부 강승희, 숙부 강상희, 참고인 강신숙의 숙부 강자희, 그리고 동네 주민 유명복 등 총 7명이 보도연맹에 가입되었고 1950년 7월 21일경

203) 참고인 박석규 진술조서(2008.7.8).

제 3 권

소속미상의 군인들에게 연행되어 임실경찰서까지 끌려간 뒤 당일 혹은 다음날 청웅면 소재 모래재에서 집단사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²⁰⁴⁾

나) 참고인 및 현지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가해기관으로 추정되는 임실경찰서 근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고인 태○○(수복 후 임실경찰서 근무)은 “해방 후부터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좌익 하던 사람들 중에 자수한 사람들을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는데 6·25 발발 후 후퇴하면서 북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살하고 후퇴하였다. 그리고 내 사촌 ‘양○○(임실군 삼계면 세심리에 거주)’도 사회주의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전쟁 발발 직후에 사살되었다. 그러나 나는 수복 후 근무자이기 때문에 임실군 보도연맹원의 희생경위와 관련하여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²⁰⁵⁾

[사진 24] 말치재



[사진 25] 모래재



진실화해위원회는 말치재와 모래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말치재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건현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참고인 정○○(당시 4세)를 만나 사건현장은 오수면 봉천리와 임실읍 대곡리의 경계지점인 산의 골짜기를 가리키고 행정구역상 임실군 둔남면(현 오수면) 봉천리에 소재하며 속칭 말치재임을 확인하였다.²⁰⁶⁾ 또한

204) 참고인 김학인 통화보고서(2008.10.6) ; 참고인 김학인 면담보고서(2008.12.12) ; 참고인 강호신 통화보고서(2008.12.15) ; 참고인 강신숙 통화보고서(2008.12.15).

205) 참고인 태○○ 면담보고서(2008.11.18).

모래재는 청웅면이 아니라 임실읍 두만리에 소재한 높지 않은 야산으로서 30번 국도 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인 및 현지조사 결과 전쟁 발발 후 임실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을 임실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시켰다가 후퇴하기 전 임실군 둔남면(현 오수면) 봉천리 속칭 말치재와 임실읍 두만리 소재 에서 집단사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말치재와 모래재 외에 다른 희생장소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²⁰⁷⁾

2)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말치재에서 모친이 목격한 시신이 11구였다는 참고인 박석규의 진술과 모래재에 시신들이 많았다는 참고인 강신석의 진술 외에는 임실지역 사건 희생자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전체 희생자의 수를 알 수 없다. 다만 진실규명대상자 박병량의 경우 참고인 박춘식(박병량의 친척, 당시 25세)이 보도연맹원이었던 박병량이 전쟁 발발 후에 사망하였다고 확인해주었기²⁰⁸⁾ 때문에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447번지 거주하였던 박병량(朴炳棟, 당시 32세)의 사망은 확인되었다. 한편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에 거주하였던 주민 6명의 신원도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한날 연행되어 한 장소에서 사살되었기 때문에 유족들의 증언이 일치하여 이들도 희생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성수면 오류리 193번지에 거주하였던 김정덕(金丁德, 당시 34세), 김경남(金經南, 당시 25세), 김경호(金經鎬, 당시 24세), 오류리 24번지에 거주하였던 강승희(姜昇熙, 40세), 오류리 226번지에 거주하였던 강상희(姜尙熙, 28세), 오류리 222번지에 거주하였던 강자희(당시 30세) 등 6명이다.

206) 정○○은 사건발생 당시 어려서 기억나지 않으나 사건현장 주변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현장을 목격한 모친으로부터 전쟁 시에 트럭에 실려 온 사람들이 돌씩 묶여서 충격을 받아 골짜기에 떨어진 사건을 자주 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희생자들의 신원이나 가해자의 소속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였다(참고인 정○○ 면담보고서, 2008.9.3).

207) 200년 피해자 현황조사 용역사업에서 파악한 참고인 이○○(1927년생, 임실읍 신안리 낙촌부락 거주)에 따르면 같은 마을 주민 이○○(호적이름은 이○○)과 한○○은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전쟁이 발발하자 임실경찰서에 연행이 되어 이기택은 청웅면 백련산 인근에서 사망하였고 한○○은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인근 '암구생이'에서 사망하였다고 하므로 백련산 인근과 암구생이 또한 보도연맹원 희생장소로 추정되나 관련자료와 참고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희생장소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이○○과 한○○의 유족을 수소문하지 못하여 이들의 희생사실 또한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참고인 이○○ 면담보고서, 2008.12.12).

208) 참고인 박춘식 통화보고서(2008.11.12).

3)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가해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으나 전쟁 발발 후 임실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내무부 치안국과 전북지방경찰국으로부터 보도연맹원 검속 및 살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이들을 임실경찰서 유치장 등에 일정기간 구금시켰다가 후퇴 무렵인 1950년 7월 20일 경 임실군 둔남면(현 오수면) 봉천리 말치재와 임실읍 두만리 모래재에서 살해하였다고 추정된다.

4) 요약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결과, 전쟁 발발 후 임실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내무부 치안국과 전북지방경찰국으로부터 보도연맹원 검속 및 살해에 관한 지시를 받고 임실경찰서 유치장 등에 일정기간 구금시켰다가 1950년 7월 중순경 임실군 둔남면(현 오수면) 봉천리 말치재와 임실읍 두만리 모래재에서 다수를 살해하였고, 이 중 박병량(朴炳暲, 당시 32세), 김정덕(金丁德, 당시 34세), 김경남(金經南, 당시 25세), 김경호(金經鎬, 당시 24세), 강승희(姜昇熙, 40세), 강상희(姜尙熙, 28세), 강자희(당시 30세) 등 7인의 희생사실이 확인되었다.

3. 사건 조사결과

가.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특징

조사결과,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띠고 있다.

첫째,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추정되는 희생규모에 비해 신청 건수가 극히 적고²⁰⁹⁾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전체 희생자 수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희생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는데 지금까지 조사결과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지역별로 7월 초순경에 ‘갑종’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나머지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경찰서 후퇴 직전에 사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최소 2군데 이상에서 보도연맹원들이 사살되었고, 각 희생장소에서는 최소 수십 명 이상이 사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사건이 있는 지역도 확인하지 못한 희생장소가 존재할 수 있

209)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구한 사건 중 전라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분류된 신청사건은 400건이 넘는다.

고, 신청사건이 없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까지를 고려하면 전쟁 발발 직후 전라북도 지역에서 보도연맹원 및 인민군에 동조할 위험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예비검속되어 사살된 희생자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조사된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각 지역별 희생자의 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각 지역별 희생자의 수(추정)

지역	희생장소(당시 행정구역)	희생자의 수(추정)
전주(완주)	완주군 동상면 일대 야산	미상
	완주군 우전면 황방산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 소리개재	
이리(익산)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번지골짜기	70여명
	정읍군 내장동 내장산골짜기 일대	미상
군산(옥구)	군산시 군산경찰서 유치장	미상
	군산시 관내 야산	미상
고창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지수재고랑	미상
금산	금산군 부리면 현내리 옥박골	미상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냇가	미상
김제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동골짜기	100여명
남원	남원군 고죽동 도둑골	100여명
무주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금구덩이골짜기	미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으름숯골	미상
부안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동골짜기	100여명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후촌골짜기	40여명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여륜개골짜기	30여명
정읍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구슬재	미상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비로골짜기	9명

제 3 권

지역	희생장소(당시 행정구역)	희생자의 수(추정)
임실	임실군 오수면 봉천리 말치재	미상
	임실읍 두만리 모래재	미상
순창	미조사	미상
장수	미조사	미상
진안	미조사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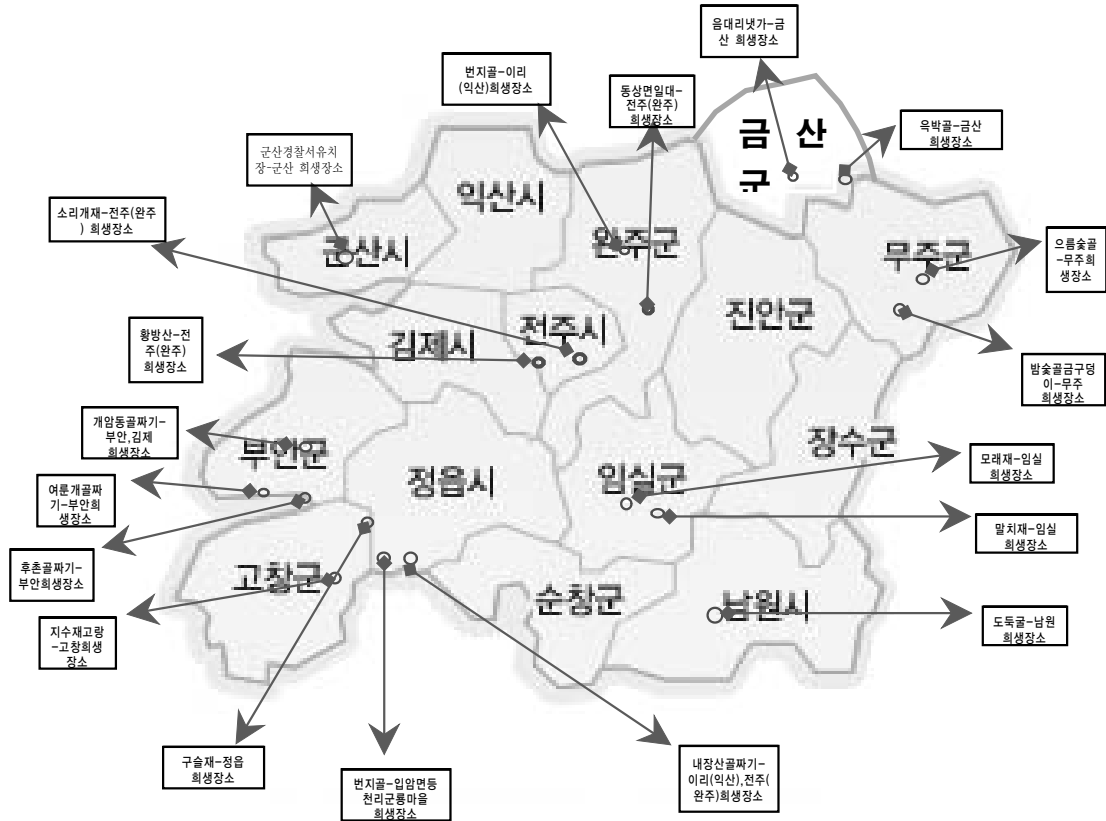
둘째,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에 대한 사살은 매우 계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희생장소가 각 경찰서의 관할지역을 벗어난 것과 각기 다른 지역 보도연맹원들임에도 희생장소가 동일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제지역 희생자들과 부안지역 희생자 일부는 부안군 소재 개암동 골짜기에서 사살되었고, 전북도경 유치장에 검속된 사람들과 이리(익산)지역 희생자 일부는 정읍군 내장산 골짜기에서 사살되었으며, 이리(익산)지역 일부 보도연맹원들이 완주군 화산면에서 사살된 것이다. 이것은 전북지역에서 보도연맹원 사살이 사전에 계획되어 희생장소를 탐색하였던 것을 의미하며 희생장소가 동일한 것은 경찰서 간에 사전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셋째, 일부 지역에서 희생자에 대한 선별 작업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전북도경과, 고창지역의 경우 연행한 사람들을 좌익활동 정도에 따라 심사를 거쳐서 분류한 후 일부 보도연맹원들을 석방시켰던 사실이 확인되었다.²¹⁰⁾

넷째,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구속 중이었던 일반인들까지도 함께 희생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사례는 남원과 군산에서 드러났는데, 일반 사건 구금자들이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사살과정에서 분류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210) 임실군의 경우도 미신청 참고인 박석규는 풀려난 보도연맹원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석방되고 아버지 박병량을 포함한 일부만 사살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사실에 대한 자료나 추가 진술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지도 1]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장소



나. 희생자의 수와 희생자의 신원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중 진실화해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경우는 총 54명이었다. 이 사건의 희생자 확인 기준은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이 있고, 시신이 수습되었으며, 제적부상 사망기록이 희생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²¹¹⁾로 하였다. 제적부 기록은 공식기록이라 할 수 있기에 사망일 및 사망장소가 제대로 기재되었다면 참고인 진술이 없어도 희생자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 근거로 활용하였다. 다만 시신수습을 못 하였거나 제적부 사망기록이 유족이 주장하는 사망일·사망장소와 상이한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을

211) 통상적으로 음력을 기준으로 한 제삿날을 사망일로 신고하였을 경우가 다수이므로 희생자 확인의 기준은 1950년 5월 중순 이후부터 1950년 7월 중순까지를 사망일로 신고하였을 경우이다.

제 3 권

추가로 확보하여 확인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41명(42건)은 다음과 같다.

〈표 4〉 희생자 신원 및 희생자 확인근거(신청사건)

지역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나이	당시 주소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여부	제적부기록	
전주 (완주)	1	7106	정철환 (鄭喆煥)	차대희 (車大喜)	여	38	전주시 이하 주소 불명	○	○	x		확인
	2	564	민영기 (閔泳基)	민영술 (閔永述)	남	27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301	○	○	○		확인
이리 (익산)	3	1283	정영관 (鄭永寬)	정진호 (鄭眞鎬)	남	35	익산군 함열면 석매리 837	○	x	○	1950.5.21	확인
	4	2646										
	5	6359	이상화 (李相和)	이길현 (李吉賢)	남	32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 1034	○	○	○		확인
	6	8506	김해균 (金海均)	김원용 (金元龍)	남	43	이리시 갈산동 번지미상	○	x	○	1950.5.28	확인
	7	8508	이덕구 (李德求)	이종규 (李鍾奎)	남	47	이리시 목천동 342	○	○	○	1950.7.9	확인
	8	9964	이봉순 (李鳳順)	이수웅 (李秀雄)	부	30	익산군 삼기면 용연리 82	○	○	○		확인
	9	9967	김석환 (金石煥)	김동군 (金東群)	남	29	익산군 성당면 부곡리 122	○	○	○		확인
군산 (옥구)	10	5499	고홍곤 (高鴻坤)	고병옥 (高炳玉)	남	36	옥구군 임피면 월하리 609	○	x	○	1950.7.18	확인
	11	6779	양원진 (梁元鎭)	양수성 (梁洙晟)	남	48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388	○	○	○		확인
	12	6828(1)	채무길 (蔡武吉)	채기묵 (蔡基默)	남	27	옥구군 나포면 주곡리 247	○	○	○		확인
	13	8046	김신정 (金臣貞)	김태욱 (金泰郁)	남	31	옥구군 미면 미룡리 126	○	○	○		확인
	14	8543	안진태 (安珍泰)	안명옥 (安明玉)	남	35	군산시 둔율동 147	○	○	○	1950.7.1	확인
고창	15	9648	성종철 (成鍾哲)	성윤기 (成潤基)	남	23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270	○	○	○	1950.5.21	확인

제 2 부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사건(1)

지역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나이	당시 주소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여부	제적부기록	
금산	16	2020	이상준 (李相駿)	이준규 (李準奎)	남	25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300	○	○	○	1950.7.20	확인
	17	9426	정동조 (鄭東朝)	정해선 (鄭海善)	남	25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344	○	○	○		확인
김제	18	486	김대영 (金大榮)	김진열 (金鎭烈)	남	31	김제군 광활면 오포리 번지미상	○	○	○		확인
	19	8407	이순태 (李淳泰)	이석환 (李錫煥)	남	28	김제군 백산면 상정리 번지미상	○	○	○		확인
	20	10139	곽창원	곽삼주 (郭參柱)	남	21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256	○	○	○		확인
	21	10274	최서균 (崔瑞均)	최남석 (崔南錫)	남	38	김제군 만경면 몽산리 222	○	○	○		확인
남원	22	7676	곽성문 (郭性文)	곽봉철 (郭鳳喆)	남	31	남원군 운봉면 덕산리 번지 미상	○	○	x		확인
	23	10144	한점녀 (韓点女)	한백장 (韓白長)	남	49	남원시 사매면 화정리 233	○	○	○	1950.6.6	확인
무주	24	6505	길준섭 (吉俊燮)	길상교 (吉相敎)	남	35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749	○	○	x	1950.6.3	확인
	25	6506	김정임 (金貞任)	김진태 (金鎭泰)	남	31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84	○	○	x		확인
	26	7833	한금배 (韓今培)	한학문 (韓學文)	남	32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867	○	○	x		확인
부안	27	5707	손정훈 (孫正薰)	손기옥 (孫基玉)	남	37	부안군 하서면 청호리 778	○	○	○		확인
	28	5806	지진만 (池鎭萬)	지동규 (池東圭)	남	26	부안군 동진면 제전리 번지미상	○	○	○		확인
	29	6793	김철 (金喆)	김홍술 (金洪述)	남	37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235	○	○	○		확인
	30	6794	허철수 (許哲洙)	허종택 (許宗鐸)	남	32	부안군 산내면 석포리 772	○	○	○		확인
	31	6795	최기원 (崔基元)	최순환 (崔順煥)	남	39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 466	○	○	○		확인
	32	7100	이상기 (李相基)	이성열 (李成烈)	남	43	부안군 동진면 오중리 번지미상	○	○	○		확인

제 3 권

지역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나이	당시 주소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여부	제적부기록	
	33	8404	은희창 (殷熙昌)	은갑동 (殷甲東)	남	39	부안군 보안면 대곡리 번지미상	○	○	○		확인
	34	8794	이양임 (李良任)	이혁춘 (李赫春)	남	28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525	○	○	○	1950.7.22	확인
정읍	35	1019	김영집 (金永執)	김보현 (金寶鉉)	부	40	정읍군 소성면 애당리 654	○	○	○	1950.6.15	확인
	36	8354	선동엽 (宣東燁)	선기홍 (宣基洪)	남	38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43	○	○	○		확인
	37	8355	김예순 (金禮順)	배동현 (裴同鉉)	남	29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76	○	○	○		확인
	38	8356	남궁대성 (南宮大聲)	남궁일남 (南宮一南)	남	34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81	○	○	○		확인
	39	8357	선동엽 (宣東燁)	선학권 (宣學權)	남	31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43	○	○	○		확인
	40	8358	황백용 (黃百龍)	황천용 (黃千用)	남	26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79	○	○	○		확인
	41	8359	주경렬 (侏京烈)	주동우 (侏東羽)	남	46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739	○	○	○	1950.7.25	확인
	42	9833	추화순 (秋花順)	주명렬 (朱明烈)	남	24	정읍군 입암면 등천리 690	○	○	○	1950.7.25	확인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사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3명이고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희생자 신원 및 희생자 확인근거(미신청사건)

지역	연번	관련유족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나이	당시 주소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여부	제적부기록	
이리 (익산)	1	권경노 (權璟老)	권용하 (權龍夏)	남	38	익산군 북일면 신영 리 863	○	○	x	정읍 내장산	확인

제 2 부 집단희생규명위원회 사건(1)

지역	연번	관련유족	희생자				확인근거				확인여부
			성명	성별	나이	당시 주소	유족진술	참고인진술	시신수습여부	제적부기록	
	2	박천동 (朴千東)	박순용 (朴順龍)	남	23	익산군 용안면 송산리 276	○	○	○		확인
	3	이태부 (李太夫)	이종철 (李鍾喆)	남	38	익산군 춘포면 인수리 530	○	○	○		확인
군산 (옥구)	4	이강수 (李康秀)	이기문 (李起文)	남	29	옥구군 옥산면 옥산리 109	○	○	○		확인
무주	5	윤홍윤 (尹弘閔)	윤홍기 (尹弘基)	남	25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531	○	○	○		확인
	6	이원희 (李元熙)	이상희 (李相熿)	남	28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 65	○	○	○		확인
임실	7	박석규 (朴錫圭)	박병량 (朴炳棟)	남	32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447	○	○	○	50.6.14	확인
	8	김학인 (金學仁)	김정덕 (金丁德)	남	35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193	○	○	○		확인
	9	김학인 (金學仁)	김경남 (金經南)	남	25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193	○	○	○		확인
	10	김학인 (金學仁)	김경호 (金經鎬)	남	24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193	○	○	○		확인
	11	강호신 (姜顯信)	강승희 (姜昇熙)	남	40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24	○	○	○		확인
	12	강호신 (姜顯信)	강상희 (姜尙熙)	남	28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226	○	○	○		확인
	13	강신숙 (姜新숙)	강자희 (姜子희)	남	30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222	○	○	○		확인

신청사건과 미신청사건을 포함하여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54명의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6〉 희생자 지역별 분포

지역별	전주 (완주)	이리 (익산)	군산 (옥구)	고창	금산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정읍	임실	합계
희생자 수(명)	1	10	6	1	2	4	2	5	8	8	7	54
비율 (%)	2	18	11	2	4	7	4	9	15	15	13	100

〈표 7〉 희생자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합계
희생자 수(명)	53	1	54
비율(%)	98	2	100

〈표 8〉 희생자 연령별 분포

성별	20대	30대	40대	합계
희생자 수(명)	22	25	7	54
비율(%)	41	46	13	100

〈표 9〉 희생자 직업별 분포

성별	농업	교육	무직	사업	기타	합계
희생자 수	37	4	3	2	8	54
비율(%)	69	7	6	4	14	100

요컨대 확인된 희생자들은 대체로 농업을 주업으로 한 20~30대의 남성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한창 사회적 활동이 많은 시기에 사살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희생은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다. 가해주체

1) 전북지방경찰국

참전경찰 출신 참고인들은 대체로 전북지방경찰국으로부터 전화통지문의 형태로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예비검속 및 사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전북도경 사찰과에 근무했던 전○○도 이런 사실을 시인하였다. 전○○에 따르면 전북도경은 전쟁 발발 초기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예비검속한 보도연맹원들 중 중요한 인물들은 전북도경 유치장 등에 구금시켜 직접 살해하기도 하였고, 후퇴가 임박해서는 일선 경찰서에 사살 명령을 내렸는데 처음에는 갑종들을 먼저 죽이고 후퇴할 무렵에는 다 사살하였다고 하였다.²¹²⁾ 특히 전북지방도경찰국(국장 윤○○, 총경) 사찰과는 각 지역 경찰서에 예비검속 및 사살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전북도경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검속자들에 대해 직접 사살을 하는 등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사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²¹³⁾

2) 각 지역 경찰서

신청인들은 대부분 가해주체를 관할경찰서로 지목하였다. 대체로 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된 희생자들은 관할경찰서에 이송·구금되었으며 구금기간 동안 가족들이 면회를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행방불명과 살해에 경찰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참전경찰 출신 참고인들도 대체로 예비검속과 살해 과정에서 관할경찰서가 주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참고인들은 각 경찰서 사찰계가 예비검속과 살해과정을 실무적으로 담당하였으며 주로 희생장소를 물색하고 인근 주민 등을 동원하여 구덩이를 파게 하였으며 총격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찰계 소속 경찰만으로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비계 등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²¹⁴⁾

212) 참고인 전○○ 면담보고서(2008.11.18).

213) 참고인 전○○는 당시 전북도경 사찰과는 3계로 구성되었는데 1계는 서무, 2계는 정보, 3계는 대공 분야였으며 보도연맹원 희생은 주로 3계가 관할하였고 3계장은 이북 출신의 김○○라고 진술하였다.

214) 참고인 전○○ 면담보고서(2008.11.18) ; 참고인 소○○ 면담보고서(2008.10.14) ;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08.11.18) ; 참고인 나○○ 면담보고서(2008.11.19) ; 참고인 정○○ 면담보고서(2008.10.14) ;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08.10.16) ; 참고인 양○○ 면담보고서(2008.10.29) ;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10.29) ;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10.15) ; 참고인 양○○ 면담보고서(2008.10.15) ; 참고인 홍○○ 면담보고서(2008.10.16) ; 참고인 박○○하 면담보고서(2008.10.30) ; 참고인 허○○ 면담보고서(2008.10.30) ; 참고인 윤○○ 면담보고서(2008.10.30) ; 참고인 최○○ 면담보고서(2008.10.15) ; 참고인 태

3) CIC

참전경찰 출신 참고인들은 보도연맹원 희생에 관여한 주된 기관 중 하나로 전북지역에 파견되었던 CIC(특무대) 대원들을 지목하였다. 전주, 군산, 이리, 남원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참고인들은 각 지역에 CIC 파견대원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주둔하였으며 이들이 보도연맹원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데 대체로는 계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보도연맹원 사살을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한편 CIC 파견대가 없었던 금산, 무주경찰서에도 전쟁 발발과 동시에 CIC 대원 1~2명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보도연맹원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술도 존재하였다.²¹⁵⁾ 따라서 전북지역에 주둔하였던 CIC 파견대는 전쟁이 발발하자 대원들이 주둔 지역과 인근 군 단위 지역 경찰서까지 파견되어 보도연맹원 희생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CIC가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사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김종필은 한 인터뷰에서 사살의 책임자로 당시 육군 정보국 4과장인 김창룡을 지목한 바 있고,²¹⁶⁾ 1949년 육본 정보국 특별수사대 수사계장이던 오상근은 김창룡이 정보국 3과, 5과 요원을 지휘해 “내려가면서 잔비소탕을 하고 숨어 있는 보련원이나 후방을 교란시키는 적색분자를 색출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²¹⁷⁾

부대 명칭과 관련하여 육군본부는 1949년 10월 20일 ‘방첩대’를 ‘CIC’로 공식 개칭했다.²¹⁸⁾ 이후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방첩대의 부대명은 ‘지역명+지구CIC’로 통일되었다.²¹⁹⁾ 따라서 사건발생 당시 전북지역에 주둔한 CIC조직²²⁰⁾의 공식명칭은 ‘전북지구CIC’이고 각 지역에 주둔하였던 CIC의 공식명칭은 ‘육본 정보국 전북지구CIC ○○파견대’이다.

CIC 관계자의 직접적인 진술은 확보할 수 없었으나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인터뷰 증언 결과, 전북지역 보도연맹원등 예비검속자들 중 일부는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전북지구CIC와 전북지구CIC 지역파견대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 면담보고서(2008.11.18).

215) 참고인 전○○ 면담보고서(2008.11.18) ;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10.29) ; 참고인 허○○ 면담보고서(2008.10.30).

216)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166~181쪽.

217) 수원시, 2001, 『수원 근·현대사 증언자료집 I』, 264쪽.

218) 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36~37쪽.

219) 예를 들어 ‘마산지구방첩대’는 ‘마산지구CIC’로, ‘부산지구방첩대’는 ‘부산지구CIC’로 변경되었다. 『남조선민보』, 1949. 12. 14일자 ; 부산일보, 1950. 2. 19일자.

220) 1948년 11월 16일 전북 전주시 노성동에 설치되었던 전북지구 파견대는 1949년 10월 20일 CIC로 개칭되었다(국군보안사령부, 『對共三十年史』, 고려서적주식회사, 1978, 36~37쪽.).

4) 헌병대

마지막으로 보도연맹원 희생의 주요 가해주체로 거론되는 기관은 국군 헌병대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쟁 발발일 당시 호남지역의 공비토벌 임무를 담당한 국군은 광주에 사단사령부를 둔 제5사단이었고, 예하연대로서 전주에 제15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과의 교전 속에서 해체된 제7사단이 7월 10일 전주에서 학도병 500명을 보충받아 제3·9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이 재편되었고 7월 14일 민부대로 개칭되었으며, 7월 16일부터 용안, 전주, 임실, 남원, 운봉 방면으로 철수하였다고 하므로²²¹⁾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살해에 가담한 헌병대는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대이거나 전북지역을 경유하여 후퇴 중이었던 헌병대일 가능성도 있다.

보도연맹원 희생에 헌병대가 주요 가해자로 지목되는 곳은 남원과 전주지역이었다. 당시 남원경찰서 사찰계에 근무했던 참고인 백○○은 남원에는 여순사건 이후로 공비토벌을 위해 3연대가 주둔하였고, 남원경찰서 경무계에 근무했던 참고인 강○○도 당시 남원에는 헌병대 파견대 1개 분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²²²⁾ 참고인들은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헌병대에 의해 남원군(현 남원시) 일대에서 사살당했다고 하였으며 이런 사실은 현장 주변 목격자들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전북도경에 근무하였던 참고인 전○○도 당시 전주시에 주둔하였던 헌병대가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 희생에 관여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²²³⁾ 보도연맹원 희생 당시 전북지역에 주둔하였던 헌병대 또한 중요 가해주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을 제외하고 가해주체의 직접적인 진술은 확보할 수 없었으나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자료조사 결과, 전북지역 희생자들은 전북지방경찰국(국장 윤○○, 총경) 소속 경찰들과 각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 그리고 각 지역에 주둔하였던 전북지구 CIC 및 전북지구CIC 지역파견대원, 헌병대원들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가해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수와 신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의 사살과 관련된 명령체계를 조사하였

221) 『한국전쟁간 연대급 이상 부대 예비속 변천』,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자료실 ‘한국전쟁사’에서 인용, <http://www.army.mil.kr/history>.

222) 참고인 백○○ 면담보고서(2008.10.16) ; 참고인 강○○ 면담보고서(2008.10.16).

223) 참고인 전○○ 면담보고서(2008.11.18).

제 3 권

다. 조사결과, 전북지역 예비검속 및 희생의 지휘계통은 경찰과 국군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찰의 명령체계를 조사하였다. 경찰의 예비검속의 지시는 내무부 치안국과 전북 지방경찰국, 각 경찰서, 각 지서로 하달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경찰국에 치안국장 명의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이라는 제목의 비상통첩을 전국 도 경찰국에 경찰 무선전보로 보냈다.²²⁴⁾ 치안국은 다시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일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 등의 치안국장 통첩을 잇따라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²²⁵⁾

참고인 전○○(전북도경 사찰과 근무)도 유사한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참고인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내무부 치안국으로부터 도경에 보도연맹원 검속 지시가 암호를 사용하여 전통(전화통지)으로 여러 차례 왔고 도경은 예비검속 결과에 관한 문서를 치안국에 수시로 보냈으며 이런 지시는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하였다.²²⁶⁾

따라서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에 관한 경찰의 명령체계는 내무부장관 백성욱(1950. 2. 7~1950. 7. 17) · 조병욱(1950. 7. 17~1951. 5. 7)→치안국장 장석윤(1950. 6. 17~1950. 7. 17) · 김태선(1950. 7. 17~1951. 6. 20)→전북지방경찰국장 윤○○(1950. 4. 27~1950. 7. 27)→각 경찰서장→ 각 지서주임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군의 명령체계를 조사하였다. CIC의 명령체계를 살펴보면, 전북지역의 경우 전북지구CIC와 전북지구CIC ○○파견대는 육군본부 정보국의 지시를 받아 보도연맹원 검속 및 희생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최초의 명령의 시기와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 육군의 각 사단 소속 헌병대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최초의 명령권자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더불어 지역에 주둔하였던 CIC와의 관계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1950년 7월 8일 전라남·북도를 제외하고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검·경의 사무가 계엄사령부로 이관되었는데 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진 동년 7월 21일경 전라북도는 이미

224)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225) 「부역자명부 제출의 건」(제호, 1950.8.6) : 「부역자명부 제출의 건」(濟地檢 제168호, 1950.8.7), 진실화해위원회 입수 경찰문서.

226) 참고인 전○○ 면담보고서(2008.11.18) : 김제경찰서 경무계 통신반에 근무했던 양○○도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전쟁 발발 후 불순분자 처리 등에 관한 무전은 평문이 아니라 암호화를 해서 숫자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일반 통신원은 암호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암호병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참고인 양○○ 면담보고서(2008.10.15).

인민군 점령기가 시작된 이후였다. 따라서 계엄사령부가 모든 업무를 관장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전라북도에 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계엄령 선포와 관계없이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육군본부와 소속 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전북지구CIC와 헌병대가 전북지방경찰국 및 각 지역 경찰서의 업무에 관여하여 보도연맹원 사살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경찰과 국군의 명령체계를 통해 예비검속되고 사살되었다. 그러나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검속과 구금, 사살과 관련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이 본 사건의 최종명령권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모든 가해행위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마. 가해의 적법성 여부

한국전쟁 직후 정부는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인민군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좌익 혐의자들에 대해 예비검속을 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미군정 시기나 정부수립 이후 예비검속제도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은 포괄적인 비상범죄와 그에 따른 형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검속과 구금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950년 7월 12일 송요찬 헌병사령관은 포고를 발표해 ‘계엄시행지역에 있어서는 예방구금을 행할 수 있다’²²⁷⁾고 규정함으로써 예비검속의 근거가 되었으나 이것도 계엄지역이 아니었던 전북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구금에 관한 포고 이전인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 통첩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7월 11일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구금하였다. 그러므로 전북지역에서의 예비검속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행위이다.

한편 조사결과 구금된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군·경에 의해 즉결사살되었다. 전쟁 발발 직후 좌익혐의자를 간첩죄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법으로는 「구 형법」, 「국방경비법」, 「국가보안법」,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227) 부산일보, 1950. 7. 18일자.

있었다. 이 중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에서, 그 외의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은 어떠한 재판과정도 없이 즉결사살되었다. 따라서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즉결사살 역시 불법행위이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전북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전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전북지구CIC, 헌병대에 의해 1950년 7월경 전라북도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국민보도연맹 전라북도연맹 각 군연맹에 가입되었던 보도연맹원을 포함한 예비검속 대상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관할경찰서(지서) 소속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소집통보를 받고 출두하였다가 경찰서 유치장, 연무장, 연초창고 등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이전의 좌익활동 경력에 따라 분류되었고 ‘갑종’은 7월 초순경에, 나머지는 전북지역경찰서의 후퇴가 임박하였던 7월 중순경에 전북 일대에서 집단사살되었다.

나.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전체 희생자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조사결과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54명이다. 신청사건 중 확인된 희생자는 41명으로 차대희(車大禧, 다-7106호) 민영술(閔永述, 다-564호), 정진호(鄭眞鎬, 다-1283호, 다-2646호), 이길현(李吉賢, 다-6359호), 김원용(金元龍, 다-8506호), 이종규(李鍾奎, 다-8508호), 이수웅(李秀雄, 다-9964호), 김동군(金東群, 다-9967호), 고병옥(高炳玉, 다-5499호) 양수성(梁洙星, 다-6779호) 채기묵[蔡基默, 다-6818(1)], 김태욱(金泰郁, 다-8046호), 안명옥(安明玉, 다-8543호), 성윤기(成潤基, 다-9648호), 이준규(李準奎, 다-2020호), 정해선(鄭海善, 다-9426호), 김진열(金鎭烈, 다-486호), 이석환(李錫煥, 다-8407호), 곽삼주(郭參柱, 다-10139호), 최남석(崔南錫, 다-10274호), 곽봉철(郭鳳喆, 다-7676호), 한백장(韓白長, 다-10144호), 길상교(吉相敎, 다-6505호), 김진태(金鎭泰, 다-6506호), 한학문(韓學文, 다-7833호), 손기옥(孫基玉, 다-5707호), 지동규(池東圭, 다-5806호), 김홍술(金洪述, 다-6793호), 허종택(許宗鐸, 다-6794호), 최순환(崔順煥, 다-6795호), 이성열(李成烈, 다-

-7100호), 은갑동(殷甲東, 다-8404호), 이혁춘(李赫春, 다-8794호), 김보현(金寶鉉, 다-1019호), 선기홍(宣基洪, 다-8354호), 배동현(裵同鉉, 다-8355호), 남궁일남(南宮一南, 다-8356호), 선학권(宣學權, 다-8357호), 황천용(黃千用, 다-8358호), 주동우(侏東羽, 다-8359호), 주명렬(朱明烈, 다-9833호)이다.

미신청사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3명으로, 권용하(權龍夏), 박순용(朴順龍), 이종철(李鍾喆) 이기문(李起文), 윤희기(尹弘基), 이상희(李相熺), 박병량(朴炳棟), 김정덕(金丁德), 김경남(金慶南), 김경호(金經顯), 강승희(姜昇熙), 강상희(姜尙熙), 강자희(姜子熙)이다.

다.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보도연맹원과 좌익혐의 등을 이유로 예비검속된 사람들이었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대다수는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농민들이었고,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당시 가해자는 희생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사살의 법적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만 이들이 인민군에게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 속에서 장기간 구금하고, 불법 사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기관은 전북지방경찰국과 각 지역 경찰서, 전북지구CIC, 그리고 헌병대이다. 이들은 내무부 치안국-전북지방경찰국-각 경찰서, 육군본부와 전북지역 주둔 사단으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 속에서 가해행위를 하였다. 상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사살 명령 여부 및 내용을 자료로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불법사살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은 전시계엄 하에서 상부기관인 계엄사령부로부터 위임된 것이었으며, 그 지휘책임은 군경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마.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과 경찰이 관할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을 불법사살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다. 비록 전시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사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사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무고한 민간인을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계획 하에 법적 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사살하고, 그 후 지금까지 유족들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게 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사건이 많지 않아 추정되는 희생 규모에 비추어 희생자 파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진실규명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신청 자체를 꺼린 결과이며, 유족들이 아직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가슴속에 고통을 안고 있는 수많은 희생자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군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 위령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희생현장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유해 발굴 및 유해안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희생자 대부분의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고, 소실(燒失) 등의 사유로 제적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역사기록의 수정

전북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기록물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평화인권교육 강화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